투자위험등급 4등급[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미래에셋자산운용㈜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미래에셋밸런스TRF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셋밸런스TRF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미래에셋밸런스TRF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2. 집합투자업자 명칭	미래에셋자산운용㈜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investments.mirae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6년 10월 29일
6. 모집(매출)증권의 종류 및 수 [모집 (매출) 총액]	투자신탁 수익증권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모집 개시(2022년 7월 29일)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 서면문서: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참고

9.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원금 손실이 가능하고「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6.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이 집합투자기구의 모투자신탁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이 투자신탁이 포함된 모자형구조에는 매월 일정한 날에 정기적으로 일부환매를 하는 방법으로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월지급식 자투자신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매월 특정시점에 자투자신탁의 월분배금 마련을 위해 모투자신탁의 현금성자산 비중이 평소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비록 이 투자신탁은 월분배금 지급을 하지 않지만, 동일한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상과 같은 효과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약정보> (작성기준일 : 2026년 10월 22일)

미래에셋밸런스TRF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DW362)

투자위험등급 4등급[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미래에셋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을 주로 **국내외 채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 **금리변동위험, 주식가격변동위험, 국가위험, 환율 변동위험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미래에셋밸런스TRF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목적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이 상이한 복수의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전략	**2.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자의 노후자금 마련 등 장기적인 투자목적달성을 위해 자산배분 대비 다양한 리스크리턴프로파일에 기초하여 분산투자하는 전략배분 투자로 변동성을 관리하고 중장기적 성과 개선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주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이 상이한 복수의 모투자신탁을 유니버스로 하여 기본전략과 알파전략으로 구분하여 투자합니다. 연금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 전략(기본전략, 알파전략)에 대한 배분을 실시하고,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변동성 대비 양호한 성과가 기대되는 전략위주로 세부전략간 비중을 조절하며 운용합니다. <모투자신탁 투자전략> [기본전략] -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국내 국공채에 70% 이상 투자 - 미래에셋단기채알파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국공채, 통안채 등의 잔존 만기가 1년 내외인 단기 국내 채권중심으로 운용하며, 주식에도 일부투자합니다. [알파전략] - 미래에셋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국내주식 중 배당성향이 높을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우선주 등)에 주로 투자하여 배당수익을 추구하며, 콜옵션(Call option)을 매도하는 커버드콜(Covered call) 전략을 활용하여 주가하락 위험을 부분적으로 방어하면서 콜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 확보를 통해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전략 사용 - 미래에셋글로벌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글로벌 고배당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추구하며, 콜옵션(Call option)을 매도하는 커버드콜(Covered call) 전략을 활용하여 주가하락 위험을 부분적으로 방어하면서 콜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 확보를 통해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전략 사용 -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주식 롱숏 전략과 인덱스헤지 전략을 주요 투자전략으로 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롱온리/숏온리 전략도 유연하게 병행 가능 - 미래에셋AI글로벌모멘텀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집합투자증권(ETF 등)에 50% 이상 투자하며,모멘텀 전략을 활용하여 최근 성과가 우수하고 상대적 성과도우수한 다양한 자산 및 전략의 ETF에 분산 투자 - 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국내 상장 리츠(REITs) 및 상장 부동산펀드에 주로 투자하며투자대상자산의 유동성 확대와 추가 수익 기회 등을 고려하여일부 상장 인프라펀드 및 해외 상장 리츠(REITs)에도 투자 - 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글로벌대체전략을 주로 활용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분산투자 -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안정적인 Yield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채권과 배당주 및 리츠(상장부동산펀드 등) 등에 주로 투자 하고, 일부 기타 자산의 투자기회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 -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주, 유럽, 아시아 등의 지역의 채권에 최소 60%이상 투자
분류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모자형,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 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0.695	0.36	-	0.7462	76	156	240	419	932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0.515	0.18	-	0.5662	58	118	182	318	70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	0.635	0.3	-	0.6862	70	144	221	385	85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	0.485	0.15	-	0.5462	55	114	176	307	68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O)	-	0.455	0.12	-	0.5162	47	97	149	261	581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은 종류 A형 및 C형 클래스를 동시에 보유하지 않아 클래스 간 판매수수료 차이 및 보유기간에 따른 비용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43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5) "총보수·비용" 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합성 총보수·비용은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된 보수와 기타비용에 투자비율에 따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추정치(기타비용 제외)는 약 0.051% 로 추정됩니다.

투자실적 추이 단위: %)

클래스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5.10.01~ 26.09.30	24.10.01~ 26.09.30	23.10.01~ 26.09.30	22.08.24~ 26.09.30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2023.03.28	8.49	7.69	6.56	-	6.1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2022.08.24	8.50	7.67	7.88	-	6.0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2023.12.11	8.41	7.58	-	-	7.8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O)	2022.12.07	8.53	7.70	7.91	-	7.04
투자신탁	2022.08.24	9.02	8.19	8.39	-	6.60
수익률 변동성		6.40	5.01	4.46	4.24	4.24

(주1)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국가 및 자산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분산투자되며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모투자신탁의 투자비중이 유연하게 조절될 수 있어 비교지수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 기간동안의 세전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써,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26.09.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외혼합채권혼합형)(단위: %)				운용 경력년수
					운용역		운용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상명	1982	본부장	9개	2,911억원	-	-	1.38	6.21	15년10개월

(주1)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현황과 수익률은 모펀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3)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4)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운용전문인력 정보는 "투자설명서"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1.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5.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6. 이 집합투자기구의 모투자신탁이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종목위험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의 가치는 해당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

		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금리 변동위험	채권의 가치는 이자율 등 여러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채권가격을 결정하는 할인율이 함께 상승함에 따라 그 가치가 하락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채권투자 시에도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재간접투자 위험	투자대상 재간접형 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요 투자대상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매우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외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으로 인해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국가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매입방법	1. 17시 이전 : 자금을 납입하는 영업일(D)로 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2. 17시 경과후 : 자금을 납입하는 영업일(D)로 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방법	1. 17시 이전 : 환매청구일(D)로 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제9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2. 17시 경과후 : 환매청구일(D)로 부터 제6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제10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C-P, C-Pe, C-P2, C-P2e, C-P2I, O]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1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1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계좌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번호 : 1577-1640 / 홈페이지 :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위탁운용사 :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 위탁업무 : 미시행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위탁운용사 :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위탁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 주1) 및 조사분석업무, 일부 매매업무		
모집기간	모집 개시(2022년 7월 29일)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모집·매출 총액	10조좌(단, 모집예정 금액 한도 내에서 존속기간 동안 계속 모집 가능)
효력발생일	2026년 10월 29일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미징구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판매수수료선취형(A) 및 판매수수료미징구형(C)을 동시에 보유하지 않아 클래스 간 판매수수료 차이 및 보유기간에 따른 비용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매경로	온라인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방침에 따른 고액거래자에게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사전 지정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판매회사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investments.miraeasset.com) 및 QR코드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investments.miraeasset.com)

[목 차]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판매)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권리에 관한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미래에셋밸런스TRF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DW362
종류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DW102
종류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DW123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DW124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DW125
종류C-P2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고액	DW127
종류O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DW126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혼합채권형)
다. 개방형 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 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 모자형, 종류형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 모자형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과 그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자투자신탁으로 구성되는 투자신탁을 의미합니다.

* 종류형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을 의미합니다.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집합투자기구의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자격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가입자에 한합니다.

3. 모집(판매)예정금액 : 10조좌

주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집예정금액 한도내에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 (판매) 기간	모집 개시(2022년 7월 29일)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모집(판매) 장소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investments.mirae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의 영업일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매입, 환매가 가능합니다.

*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미래에셋밸런스TRF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DW362
종류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DW102
종류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DW123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DW124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DW125
종류C-P2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고액	DW127
종류O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DW126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 자	내 용
2022.07.29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2022.08.12	종류O 신설
2022.08.24	최초 설정
2024.10.11	모투자신탁 명칭변경(미래에셋글로벌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 미래에셋글로벌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 미래에셋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2025.03.14	운용역 변경(윤병호 → 이상명)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입니다.
*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Tower1 13층(청진동, 그랑서울) (우.03159) ☏ 1577-1640

나. 운용(지시) 업무등의 위탁 여부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산 중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 등을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추후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별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해당집합투자기구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명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USA) LLC
설립일	2008년 4월 7일 설립
회사주소	1212 Avenue of the Americas, 10th Floor, New York, NY 10036 전화번호: (1)-212-205-8300 팩스: (1)-212-205-8390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명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Hong Kong) Limited
설립일	2003년 12월 17일 설립
회사주소	Room 1101, 11/F, Lee Garden Three, 1 Sunning Road, Causeway Bay, Hong Kong 전화번호: (852)-2295-1500 팩스: (852)-2295-0698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외국에서 발생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 된 자산에 대한 다음 업무를 위탁합니다.

해당집합투자기구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위탁업무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	미시행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 주1) 및 조사분석업무, 일부 매매업무

주1) 시장의 급격한 변동, 신규 채권에 대한 입찰 및 이와 유사한 상황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인 미래에셋자산운용(주)에서 상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이력
이상명	1982	본부장	15년10개월	(07년~10년)티맥스소프트 SOA팀BA실 (10년~15년)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Quant&Platform Solution팀 (15년~현재)미래에셋자산운용 AI금융공학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6.09.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외혼합채권혼합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상명	9개	2,911억원	-	-	1.38	6.21	1개	317억원

(주1)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현황과 수익률은 모펀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3)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모투자신탁 책임운용전문인력>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고영서	1985	팀장	17년3개월	(09년~12년)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채권외환본부 (12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6.09.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채권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고영서	15개	23,762억원	-1.94	0.73	-3.05	-0.33	-	-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신재훈	1975	본부장	17년1개월	(02년~05년) SK증권 투자신탁팀 (05년~07년) AIG생명 투자운용부 (09년~12년)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채권운용 (12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6.09.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채권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신재훈	15개	23,789억원	-4.37	-0.22	-3.05	-0.33	3개	5,614억원

미래에셋단기채알파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이현경	1973	대표	24년0개월	(01년~02년)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스크관리팀 (02년~08년) 미래에셋자산운용 금융공학팀 (08년~12년)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Multi Strategy본부 (12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AI금융공학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6.09.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채권혼합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현경	13개	24,780억원	22.48	16.20	17.15	13.73	-	-

미래에셋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이현경	1973	대표	24년0개월	(01년~02년)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스크관리팀 (02년~08년) 미래에셋자산운용 금융공학팀 (08년~12년)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Multi Strategy본부 (12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AI금융공학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6.09.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혼합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현경	13개	24,780억원	82.03	52.45	51.78	34.59	-	-

미래에셋글로벌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이현경	1973	대표	24년0개월	(01년~02년)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스크관리팀 (02년~08년) 미래에셋자산운용 금융공학팀 (08년~12년)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Multi Strategy본부 (12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AI금융공학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6.09.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주식혼합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현경	13개	24,780억원	7.01	9.61	1.91	8.30	-	-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박현수	1990	팀장	10년9개월	(16년~17년)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17년~18년)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리서치팀 (18년~20년) 하나UBS자산운용 리서치팀 (20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6.09.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채권혼합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박현수	6개	3,905억원	13.47	11.25	17.15	13.73	2개	266억원

미래에셋AI글로벌모멘텀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미래에셋밸런스TRF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이창헌	1977	본부장	17년9개월	(04년~05년) 에스케이텔레텍 (05년~07년) 한국씨티은행 기업금융 (08년~11년) 유리자산운용 퀀트운용팀 (11년~12년)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전략리서치팀 (12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AI금융공학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6.09.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혼합자산)(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창헌	3개	3,166억원	19.06	17.94	15.60	17.20	-	-

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김명준	1984	본부장	17년10개월	(08년~10년)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AI운용본부 (10년~13년) 미래에셋자산운용(브라질) (13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AI금융공학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6.09.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외혼합부동산)(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명준	23개	17,247억원	2.28	3.28	2.28	3.28	-	-

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신광호	1983	본부장	7년3개월	(09년~10년)삼성생명/법인지원팀 법인상품P (10년~19년)윌리스타워스왓슨코리아투자자문/Investment Consulting (19년~현재)미래에셋자산운용 자산배분부문

성명	운용현황(26.09.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재간접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신광호	4개	212억원	5.61	4.58	12.15	13.80	-	-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미래에셋밸런스TRF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이현경	1973	대표	24년0개월	(01년~02년) 미래에셋자산운용 리스크관리팀 (02년~08년) 미래에셋자산운용 금융공학팀 (08년~12년)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Multi Strategy본부 (12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AI금융공학운용부문
김진하	1974	본부장	26년9개월	(00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부문
고영서	1985	팀장	17년3개월	(09년~12년)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채권외환본부 (12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6.09.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외혼합채권혼합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이현경	13개	24,780억원	2.77	3.62	1.38	6.21	-	-
김진하	9개	27,688억원	2.77	3.62			-	-
고영서	15개	23,762억원	2.77	3.62			-	-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김진하	1974	본부장	26년9개월	(00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6.09.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채권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진하	9개	27,688억원	-1.20	1.55	-0.84	1.87	-	-

<모투자신탁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민경현	1992	매니저	0년3개월	(21년~22년) SK증권 Coverage본부 (22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종모	1998	매니저	0년0개월	(22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자산배분부문

성명	운용현황(26.09.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재간접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민경현	1개	126억원	5.61	4.58	12.15	13.80	-	-
이종모	-	-	-	-			-	-

미래에셋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양성종	1994	매니저	1년7개월	(20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AI금융공학운용부문

성명	운용현황(26.09.30기준)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주식혼합형)(단위: %)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양성종	3개	35,879억원	82.03	52.45	51.78	34.59	-	-

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 간	(책임/부책임)운용전문인력
2022.08.24 ~ 2025.03.13	윤병호
2025.03.14 ~ 현재	이상명

다. 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명 칭	기 간	(책임/부책임)운용전문인력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13.05.06 ~ 2026.07.29	서재춘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26.07.30 ~ 현재	신재훈
미래에셋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2012.03.05 ~ 2019.06.04	이현경
미래에셋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2019.06.05 ~ 2025.03.13	이현경(책임), 윤병호(부책임)
미래에셋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2025.03.14 ~ 현재	이현경(책임), 양성종(부책임)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09.04.29 ~ 2010.10.24	서재춘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10.10.25 ~ 2011.05.24	허준혁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11.05.25 ~ 현재	김진하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012.01.05 ~ 2012.06.19	김진하, 장원영, 홍사욱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012.06.20 ~ 2015.06.21	김진하, 박건형, 홍사욱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015.06.22 ~ 2016.01.28	김진하, 이헌복, 홍사욱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016.01.29 ~ 2016.12.01	김진하, 홍사욱, 황영진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016.12.02 ~ 2022.02.09	김진하, 이현경, 홍사욱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022.02.10 ~ 현재	고영서, 김진하, 이현경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15.03.30 ~ 2026.06.25	서재춘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2026.06.26 ~ 현재	고영서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017.03.10 ~ 2019.07.23	박헌석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019.07.24 ~ 2020.05.28	홍성범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020.05.29 ~ 2022.06.29	홍성범(책임), 이규상(부책임)

명 칭	기 간	(책임/부책임)운용전문인력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022.06.30 ~ 2022.10.13	이규상(책임), 홍성범(부책임)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022.10.14 ~ 2024.07.09	최주훈(책임), 홍성범(부책임)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024.07.10 ~ 2025.12.22	최주훈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025.12.23 ~ 현재	박현수
미래에셋단기채알파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018.11.21 ~ 현재	이현경
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021.06.01 ~ 2025.01.23	신광호
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025.01.24 ~ 2026.07.29	신광호(책임), 김승범(부책임)
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026.07.30 ~ 2026.10.28	신광호(책임), 김승범(부책임), 민경현(부책임)
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2026.10.29 ~ 현재	신광호(책임), 민경현(부책임), 이종모(부책임)

라.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의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성 명	세부 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허준혁	과거경력 : 한국채권연구원 미래에셋자산운용(홍콩) 채권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 현재지위 :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USA)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밸런스TRF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80% 이상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밸런스TRF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80% 이상

미래에셋단기채알파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밸런스TRF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80% 이상

미래에셋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밸런스TRF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80% 이상

미래에셋글로벌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밸런스TRF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80% 이상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밸런스TRF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80% 이상

미래에셋AI글로벌모멘텀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밸런스TRF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80% 이상

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밸런스TRF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80% 이상

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밸런스TRF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80% 이상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밸런스TRF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80% 이상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밸런스TRF안정형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다른 모투자신탁과 합산하여 80% 이상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구분	최초설정일	가입자격
종류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종류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2023.03.28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투자자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2023.12.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2022.08.2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중 온라인 가입자
종류C-P2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고액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중 20억 이상 가입자

종류O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2022.12.0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중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 의한 가입자

(2)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

구분	지급비율(연 %)						
	수수료			보수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 수수료	운용 보수	판매 보수	신탁 보수	사무 관리
종류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	-	-	0.3	0.36	0.02	0.015
종류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	-	-	0.3	0.18	0.02	0.015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	-	-	0.3	0.3	0.02	0.015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	-	-	0.3	0.15	0.02	0.015
종류C-P2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고액	-	-	-	0.3	0.03	0.02	0.015
종류O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	-	-	0.3	0.12	0.02	0.015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미징구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판매수수료선취형(A) 및 판매수수료미징구형(C)을 동시에 보유하지 않아 클래스 간 판매수수료 차이 및 보유기간에 따른 비용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방침에 따른 고액거래자에게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사전 지정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이 상이한 복수의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1~11항을 포함하여 80% 이상	이 투자신탁은 국내 국공채에 70% 이상 투자합니다.
2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1~11항을 포함하여 80% 이상	이 투자신탁은 국내 국공채를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
3	미래에셋단기채알파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1~11항을 포함하여 80% 이상	이 투자신탁은 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일부 주식에 투자하는 혼합채권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4	미래에셋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1~11항을 포함하여 80% 이상	이 모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신탁재산의 90%까지 투자하며, 파생상품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 이하인 혼합주식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5	미래에셋글로벌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1~11항을 포함하여 80% 이상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주식에 80% 이하로 투자하는 주식혼합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6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1~11항을 포함하여 80% 이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과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7	미래에셋AI글로벌모멘텀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1~11항을 포함하여 80% 이상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혼합자산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8	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1~11항을 포함하여 80% 이상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9	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1~11항을 포함하여 80% 이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0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1~11항을 포함하여 80% 이상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외 채권에 신탁재산의 30% 이상을 투자하며, 일부 주식 등의 기타자산에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11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1~11항을 포함하여 80% 이상	이 집합투자기구는 미주, 유럽, 아시아 지역 채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12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20% 이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단, 대규모 환매청구의 발생, 모투자신탁의 환매제한 등의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40% 이하의 범위내에서 20%를 초과할 수 있음)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13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 ~ (12)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 ~ (12) 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1) 이 투자신탁은 투자자의 노후자금 마련 등 장기적인 투자목적달성을 위해 자산배분 대비 다양한 리스크리턴 프로파일에 기초하여 분산투자하는 전략배분 투자로 변동성을 관리하고 중장기적 성과 개선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주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이 상이한 복수의 모투자신탁을 유니버스로 하여 기본전략과 알파전략으로 구분하여 투자합니다. 연금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각 전략(기본전략, 알파전략)에 대한 배분을 실시하고, 금융시장의 변화에 따라 변동성 대비 양호한 성과가 기대되는 전략위주로 세부전략간 비중을 조절하며 운용합니다.

(2) 전략배분 투자 및 유니버스 구성
1) 투자유니버스 구성
① 기본전략은 시중 금리 +α의 기본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순수채권형과 채권알파형으로 세부전략을 구분합니다.
- 순수채권형: 주로 국공채 및 회사채(A-이상), CP(A2-이상)등 우량 채권 투자
- 채권알파형: 순수채권형과 유사하게 우량 채권에 주로 투자하되 일부는 채권 이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순수채권형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

[기본전략 유니버스]

구분	모펀드명
순수채권형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채권알파형	미래에셋단기채알파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② 알파전략은 기본전략을 보완하고 보다 적극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으로 중위험중수익형, 대체투자형, 인컴투자형으로 세부전략을 구분합니다. 전략별 유니버스 선정시 변동성을 감안하여 선정함으로 이 펀드에서 노출되는 전체적인 변동성을 제한합니다. 세부 전략 내 비교를 통하여 특정 전략에 대한 쏠림을 막고 국내외 다양한 자산을 편입하여 리스크를 분산할 계획입니다. 각 세부 전략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과 수익성이 차별화되는데 이러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전략별 비중을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 중위험중수익형: 시장위험 노출도를 일부 감소시키는 전략을 활용하거나 자산배분을 통하여 위험을 분산하며

운용하는 전략
- 대체투자형: 전통자산(주식, 채권)과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이나 전략에 투자
- 인컴투자형: 상대적으로 높은 인컴이 기대되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인컴수익 누적

[알파전략 유니버스]

구분	모펀드명
중위험중수익	미래에셋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미래에셋글로벌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미래에셋AI글로벌모멘텀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대체 투자	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인컴투자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 이 투자신탁에서 정의하고 있는 상기 전략과 투자자가 생각하는 전략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략별 모펀드 구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투자설명서 변경 및 수시공시를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실질투자(모펀드에서 투자하는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 비중과 이 펀드에서 투자하는 모펀드의 비중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은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투자합니다. 또한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에의 실질투자(모펀드에서 투자하는 투자부적격등급 채무증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 비중과 이 펀드에서 투자하는 모펀드의 비중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은 자산총액의 30% 이하로 투자합니다.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합산하여 40% 이하로 투자합니다.

※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국가 및 자산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분산투자되며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모투자신탁의 투자비중이 유연하게 조절될 수 있어 비교지수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기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법제89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모투자신탁명칭	주요투자전략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① 국내 국공채에 70% 이상 투자합니다. ※ 국공채란? 다음 각목의 유가증권. 다만 라목 내지 바목의 기관은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에 한합니다. 가. 국채증권 나. 통화안정증권 다. 지방자치법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관이 발행한 채권 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기관이 발행한 채권 마.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이 발행한 채권 바.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 ② 목표 듀레이션, 잔존만기 구성 등을 고려한 벤치마크 선정 및 복제를 통한 운용전략을 기본으로 하되, 시장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초과수익전략을 병행하여 운용합니다. ③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수익 증권 등 기타 증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채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Customized KIS국공채지수(3M~3Y)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① 국내 국공채에 70% 이상 투자합니다. ※ 국공채란? 다음 각목의 유가증권. 다만 라목 내지 바목의 기관은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에 한합니다. 가. 국채증권 나. 통화안정증권 다. 지방자치법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관이 발행한 채권 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기관이 발행한 채권 마.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이 발행한 채권 바.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 ② 목표 듀레이션, 잔존만기 구성 등을 고려한 벤치마크 선정 및 복제를 통한 운용전략을 기본으로 하되, 시장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초과수익전략을 병행하여 운용합니다. ③ 비교지수 : Customized KIS 국공채지수 ※ 비교지수: Customized KIS 국공채지수
미래에셋단기채알파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①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90% 이하로 투자하며 국내 주식에 30% 이하로 투자합니다. ②국공채, 통안채 등의 잔존 만기가 1년 내외인 단기 국내 채권 중심으로 운용하며, 다음과 같은 투자전략으로 주식에도 일부 투자합니다. -페어트레이딩(Pair Trading) 전략: 계량 모델에 기반하여 동일 기업의 우선주와 보통주간 롱숏(Long Short), 통계적으로 과거 오랜 기간 유사한 주가흐름을 보인 종목간 롱숏 등의 전략 -이벤트드리븐(Event Driven) 전략: 기업의 합병, 분할, 유상증자 등의 이벤트가 발생하여 차익거래 기회가 포착되는 경우 관련 종목간 롱숏 또는 공모주(IPO), 블록딜(Block Deal) 등에 투자하는 전략 ③투자전략 및 운용규모 등을 감안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증권(ETF 포함), 파생상품 등에 일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없음
미래에셋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①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범위 내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합니다. 특히, 국내주식 중 배당성향이 높을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우선주 등)에 주로 투자하여 배당수익을 추구합니다. ② 또한, 이 투자신탁은 배당주등으로 구성된 주식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콜옵션(Call option)을 매도하는 커

	버드콜(Covered call) 전략을 활용하여 주가하락 위험을 부분적으로 방어하면서 콜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 확보를 통해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KOSPI 200 지수를 기초 지수로 하는 콜옵션을 매도하여 추가적인 프리미엄 누적 및 안정적인 성과 개선을 추구합니다. 옵션 매도 전략은 기본적으로 현재 주가 지수의 105% 수준인 외가격(OTM)을 행사가로 하는 최근월물 콜옵션 매도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옵션의 만기, 행사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옵션 프리미엄과 리밸런싱 일정 등을 감안하여 익월물 옵션 또는 주간 옵션도 일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의 상승이 예상될 경우 옵션 매도 비중을 낮추고 행사가를 높이게 되며, 시장의 하락이 예상될 경우 옵션 매도 비중을 높이고 행사가를 낮춰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다만, 주식 포트폴리오가 옵션의 기초지수인 KOSPI 200 지수의 추종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KOSPI 200 지수와의 수익률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대했던 커버드콜 전략의 성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KOSPI200(70%) + MMI(30%)
미래에셋글로벌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①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글로벌 주식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특히, 글로벌 고배당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추구합니다. ② 또한, 이 투자신탁은 위 지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선정한 주식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콜옵션(Call option)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Covered call)을 활용하여 주가하락 위험을 부분적으로 방어하면서 콜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 확보를 통해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MSCI AC World 지수를 기반으로 고배당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함과 동시에 동 지수를 구성하는 각 국가의 대표 주가 지수(S&P 500, EuroStoxx50, Nikkei225, HSCEI 등)을 기초 지수로 하는 콜옵션을 매도하여 추가적인 프리미엄 누적 및 안정적인 성과 개선을 추구합니다. ③ 옵션 매도 전략은 기본적으로 월간 옵션을 활용하되 시장 상황과 국면에 따라 유동적으로 옵션 매도 여부, 수량, 행사가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주간 옵션 또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단기적으로 시장의 상승이 예상될 경우 옵션 매도 비중을 낮추고 행사가를 높이게 되며, 시장의 하락이 예상될 경우 옵션 매도 비중을 높이고 행사가를 낮춰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다만, 주식 포트폴리오와 MSCI AC World 지수 간의 수익률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대했던 커버드콜 전략의 성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없음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① 국내 주식에 50% 미만으로 투자하고, 채권에 90% 이하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② 주식 롱숏 전략과 인덱스헤지 전략을 주요 투자전략으로 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롱온리/숏온리 전략도 유연하게병행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전략에 따른 Net Exposure(롱 포지션에서 숏 포지션을 차감한 비율)는 기본적으로 -20~+20% 수준을 목표로 하지만 이는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식 롱숏(Long/Short) 전략: 장기 성장 트렌드의 수혜/비수혜 종목(바스켓) 간 롱(Long,매수)/숏(Short,매도) 포지션 대비를 통해 구조적 변화에 따른 상대적 수익 추구

	▷ 인덱스헤지(Index Hedge) 전략: 시장 내 성장 섹터/테마에 대한 선별적 포지셔닝과 시장지수 매도전략을 병행하여 시장 대비 초과 수익 추구 ▷ 롱온리/숏온리(Long only/Short only) 전략: 장기적으로 가치상승/하락이 예상되는 자산에 대해 매수전략 만(Long only)의 포지션 또는 매도전략 만(Short only)의 포지션 보유 전략을 구사하여 수익 추구 ※ 비교지수: 없음
미래에셋AI글로벌모멘텀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①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ETF 등)에 50% 이상 투자하며, 모멘텀 전략을 활용하여 최근 성과가 우수하고 상대적 성과도 우수한 다양한 자산 및 전략의 ETF에 분산 투자하여 장기가치 상승을 추구합니다. ②국내외에 상장된 ETF를 대상으로 각 ETF의 규모 및 유동성, ETF간의 상관관계 및 분산효과 그리고 투자비용을 감안하여 선정한 국내외 주식, 채권, 기타(원자재,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하는 ETF로 투자 유니버스를 구성합니다. ③투자 유니버스에 포함된 ETF의 모멘텀 분석(성과 추이에 따른 추세 추종 전략)을 위하여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알고리즘 모델을 활용합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모멘텀 전략에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되는 다양한 시장 데이터들(총수익률, 변동성, 금리스프레드, 자산간 상관관계 등)을 입력값으로 하며 이에 기반해 최적의 모멘텀 전략을 위한 자산별 모멘텀 스코어 및 포트폴리오 구성에 필요한 주요 스코어를 산출하도록 신경망을 진화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활용합니다. ④AI 알고리즘 모델을 통해 산출된 모멘텀 스코어 상위에 있는 ETF를 투자대상으로 하되 AI 리스크(과최적화, 예측오차, 고려하지 못하는 변수들 존재 등)를 고려하여 리스크관리 및 포트폴리오 분산 관점에서 최종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⑤AI 알고리즘 모델 및 포트폴리오 구성 방식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투자 종목 및 투자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리밸런싱을 수행합니다. ⑥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투자한도 내에서 ETF 외의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80조제5호의4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본인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50%를 초과하여 투자하지는 않아 법 시행령 제80조제5호의4 다목(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출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비교지수: 없음
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①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에 50% 초과하여 투자합니다. ② 국내 상장 리츠(REITs) 및 상장 부동산펀드에 주로 투자하며 투자대상자산의 유동성 확대와 추가 수익 기회 등을 고려하여 일부 상장 인프라펀드 및 해외 상장 리츠(REITs)에도 투자합니다. ③ 상장 리츠(REITs)/ 상장 부동산펀드 등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편입비는 80%를 기준으로 최소 65%에서 최대 95%를 목표로 변동성매매를 수행하며, 부동산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을 편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인컴수익을 누적할 계획입니다.

	④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투자한도 내에서 집합투자증권 외의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없음
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1)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대체전략을 주로 활용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분산투자합니다. 글로벌대체전략이란 글로벌 경제상황이나 시장상황과 무관한 안정적인 수익 추구를 목표로 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글로벌대체전략으로는 Global Macro, Event Driven, Equity Hedged, Relative value, Multi-Strategy 등이 있습니다. ① Global macro 전략 : 글로벌 거시경제상황을 분석하여 주식, 채권, 금리, 통화등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 ② Event Driven 전략 : 기업의 인수합병, 구조조정, 재무건전화, 자사주 매입, 채무교환 등 이벤트 발생시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익이 예상되는 포지션을 구축하는 전략 ③ Equity hedged 전략 : 퀀트, 펀더멘털분석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식을 분석하고 매수/매도 하여 수익 추구 ④ Relative value 전략 : 연관성 높은 종목간 가격차이가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상황에 대한 정성,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 ⑤ Multi strategy : 다양한 전략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수익 추구 ※ 상기 운용전략은 글로벌대체전략의 예시이며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은 추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글로벌대체전략 펀드 선정 및 투자프로세스 ① 투자 Pool 선정 - 다수의 글로벌 펀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글로벌대체전략을 구사하는 펀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데이터 교차 검증을 실시하여 우수 펀드 선별 - 수백여 개 글로벌 유수 운용사들과의 네트워크 활용,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집합투자기구를 선제적으로 발굴 ② 투자대상 펀드 분석 - 투자대상 펀드의 정량/정성 지표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투자역량의 탁월성 및 투자역량의 지속 가능성 판단 - 분석결과에 따라 관리 ③ 포트폴리오 구축 및 위험관리 - 매크로 전망, 세부 전략별 투자기회등을 고려한 최적 포트폴리오 구축 - 잠재된 가격 하락위험요인들을 사전에 검토, 상시 모니터링 및 철저한 리스크 관리 ※ 비교지수: 없음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①국내외 채권에 최소 30%이상 투자하며, 주식 및 기타자산에 분산 투자합니다 ②안정적인 Yield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채권과 배당주 및 리츠(상장부동산펀드 등) 등에 주로 투자 하고, 일부 기타 자산의 투자기회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합니다. 상관 관계가 상이한 서로 다른 자산군에 투자함에 따른 포트폴리오 분산효

	과를 이용하여 장기 가치상승을 추구 합니다. ※ 비교지수: KIS종합채권지수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① 미주, 유럽, 아시아 지역 등의 채권에 최소 60%이상 투자합니다. ② 이 중 "해외채권"에 대한 투자는 60%이상으로 합니다.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BB-이상의 신용 평가 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한하며 BB+이하의 채권신용평가 등급을 부여받은 법인이 발행한 것은 20%이내로 투자합니다. ※ 비교지수: 없음

주1) 각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대상 국가 현황 (CIA 및 Bloomberg 기준)

독일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4,66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8,411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1,949.0
	1.4	-0.3	-0.2	수입 (2024 년 , 십억 US$)	1,774.0
주요산업	섬유, 석탄, 시멘트 ,자동차, 기계, 화학, 전자, 식음료, 선박 등				

미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5 년 , 십억 US$)	30,762			인구 (2025년 추정, 만 명)	34,178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3년	2024년	2025년	수출 (2025 년 , 십억 US$)	3,429.8
	2.9	2.8	2.1	수입 (2025 년 , 십억 US$)	4,361.7
주요산업	기술, 금융, 자동차, 의료, 에너지, 농업 등				

브라질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2,179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22,005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388.0
	3	3.2	3.4	수입 (2024 년 , 십억 US$)	377.0
주요산업	섬유, 신발, 화학, 시멘트, 목재, 철 등				

싱가포르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547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602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978.0
	4.1	1.8	4.4	수입 (2024 년 , 십억 US$)	786.0
주요산업	전자, 화학, 금융서비스, 석유, 가공식품, 생명과학 등				

영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3,644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6,845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1,117.0
	4.8	0.4	1.1	수입 (2024 년 , 십억 US$)	1,158.0
주요산업	공작 기계, 전자, 자동화 기계, 철도설비, 선박, 항공기 등				

인도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3,919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40,912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822.0
	7.6	9.2	6.5	수입 (2024 년 , 십억 US$)	923.0
주요산업	섬유, 화학, 식품 가공, 철강, 운송 장비, 시멘트, 광업, 석유, 기계, 소프트웨어, 제약 등				

일본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4,026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2,320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922.0
	0.9	1.5	0.1	수입 (2024 년 , 십억 US$)	965.0
주요산업	자동차, 전자, 기계, 철강, 비철 금속, 선박 등				

중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18,744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41,604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3,793.0
	3.1	5.4	5	수입 (2024 년 , 십억 US$)	3,254.0
주요산업	광업 및 광업 가공, 채광, 철강, 석탄, 군수, 시멘트, 섬유, 소비재 등				

한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1,713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5,208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835.0
	2.6	1.4	2	수입 (2024 년 , 십억 US$)	758.0
주요산업	전자, 통신, 자동차, 화학, 조선, 철강 등				

호주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1,752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2,676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425.0
	4.2	3.4	1.4	수입 (2024 년 , 십억 US$)	405.0
주요산업	광업, 운수장비, 식품가공, 화학 등				

홍콩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407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729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739.0
	-3.7	3.2	2.5	수입 (2024 년 , 십억 US$)	723.0
주요산업	무역, 물류, 금융, 관광, 의류, 섬유, 조선업 등				

* 투자목적, 투자전략에 특정국가 등으로 투자지역을 한정한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상기 국가들은 투자 가능 국가 중 일부를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기 국가들이 아닌 국가에도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상기 국가들에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대부분의 자산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 모투자신탁의 위험 관리에 영향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포트폴리오 및 환위험 등에 대한 모투자신탁 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② 유동성 위험 및 관리, 비상대응계획
[유동성 위험]
모투자신탁의 보유자산의 시장 유동성 저하 등으로 인한 자금유출에 적절이 대응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유동성 관리]
해당 펀드는 규모와 운용기간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모투자신탁을 대상으로 유니버스를 구축하여 유동성 위험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또한, 편입 모투자신탁별 최대 투자 비중 한도를 정해 특정 펀드에 과한 쏠림을 방지하고, 편입 펀드의 총 자산 대비 투자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유동성 위험을 관리합니다.

[주요 비상대응계획]
내부 위기상황 지표를 설정하고 일간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위기단계별(주의, 경계, 심각)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주의단계에서는 투자집중도등 포트폴리오 점검, 위기발생원인과 지속가능성등을 검토하게 됩니다.경계단계에서는 부실가능자산자산에 대한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하고심각단계에서는 전사적인 차원의 위기대응(예, 유동성 확보방안 마련 및 실행, 필요시 법령의 절차에 따른 환매연기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③환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에서는 별도의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환헤지 여부는 투자설명서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편입 자산의 성과에 따라 실적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투자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위험은 자투자신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래 투자위험들은 모투자신탁 및 자투자신탁에 동시에 적용되는 위험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집합투자기구 상품 투자시 인지해야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 위험(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일반적으로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세부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종목위험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의 가치는 해당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금리 변동위험	채권의 가치는 이자율 등 여러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채권가격을 결정하는 할인율이 함께 상승함에 따라 그 가치가 하락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채권투자 시에도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부도등의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종목의 발행회사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장외파생상품투자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금 전액의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가격 변동위험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들은 주로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주식과 같은 가격변동위험이 있습니다. 주식의 가격은 해당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 외의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에 투자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위험	일반적으로 장외시장의 거래는 거래소를 통한 장내거래에 비하여 정부의 규제나 감독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소의 정산이행보증과 같이 장내거래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보호조치들이 장외거래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투자에 투자시에는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 투자자금 전액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등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훨씬 큰 신용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장외시장은 통상 유동성이 부족하므로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를 종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위험	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 또는 계약상대방이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당해 계약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채무 등의 지급유예, 채무증권 등이 주식과 같은 지분증권 또는 다른 종류의 새로운 채무증권(계약) 등으로의 전환, 변제기간이 장기간 유예되는 등의 방식으로 당초의 권리가 변경되어 투자원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환위험 노출과 관련하여서는 당투자신탁 위험관리의 환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및 인프라 자산 투자위험	부동산, 인프라 관련 자산의 가치는 해당지역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이자율 등 여러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및 기타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부동산, 인프라 관련 집합투자기구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인프라 관련 자산에 투자하게 되는 경우라도 부동산, 인프라 관련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위험수준에 노출됩니다.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재간접투자 위험	투자대상 재간접형 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요 투자대상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세부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매우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외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으로 인해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국가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커버드콜의 규모위험	이 투자신탁은 설정규모가 적정규모에 미달하거나 운용 중 환매 등으로 인하여 설정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계획됐던 커버드콜 전략의 이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운용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위험(자금송환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해당 국가로부터 이 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행위 또는 증권의 매매절차와 관련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국가로부터의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 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예탁증서(DR)투자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 투자시 주식예탁증서(DR 또는Depository Receipt)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예탁증서는 본국에서 발행된 주식(원주)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시장상황에 따라 원주의 주가움직임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 주식예탁증서 표시 통화와 원주의 표시통화 간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본래 기업가치의 변화 없이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위험 : 원주가 거래되는 국가와 주식예탁증서가 거래되는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양 국가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선진국에서 거래되는 주식예탁증서라 하더라도 해당 종목의 원주가 속한 국가의 정치/사회/경제적 불안정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기타 변수 : 양 국가간 시차, 자본시장 규모 및 투명성 차이 등
집중투자에 따른위험(종목)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종목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종목의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따른 위험(지역)	이 집합투자기구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전체 투자 가능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따른위험(섹터)	이 집합투자기구는 일부 산업에 속하는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적극적매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수행할 수 있으며, 통상 이러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비용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동 전략은 일반적으로 시장수익률과 괴리가 클 수 있으므로, 기대수준이 시장수익률 수준인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이 투자신탁은 우선주 및 배당주라는 한정된 투자대상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좀더 분산 투자된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더 큰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시장상황 또는 환경변화에 불리하게 영향을 받아 그 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투자신탁에 비해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중소형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할 예정인 배당주에는 중소형주가 많이 포함됩니다. 중소형주에의 투자는 대형주에 주로 투자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 및 가격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선주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할 예정인 우선주는 의결권이 제한되는 대신 보통주에 비해 주가 변동성이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상승할 경우 우선주의 가격상승폭은 보통주의 가격상승폭에 못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 보통주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투자적격등급 미만 채권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일부 투자할 수 있는 하이일드 채권(신용등급 BB+ 이하)은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채권들로, 투자적격등급(신용등급 BBB- 이상)의 채권들보다 높은 금리, 신용 및 유동성 위험 등이 수반됩니다. 하이일드 채권은 재무상황악화, 신용상태의 악화,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 지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하여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커버드콜 전략 위험	이 투자신탁의 투자 대상에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집합투자기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주가가 하락하거나 횡보 또는 완만히 상승할 경우 커버드콜 전략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주가가 단기 급등할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률 상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종목 선정 및 비중 결정 등 투자신탁의 운용과정에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에 기반한 모델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모델은 과거 수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신경망을 진화시키는 심화학습(Deep Learning) 과정을 통해 결과값을 산출하여 전략을 수행하므로 실제 시장상황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모델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롱숏전략 위험	이 투자신탁은 롱숏 전략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숏(매도)한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롱(매수)한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롱숏 전략 모두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롱 전략만 추구하는 것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롱숏 전략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차입 매도 비용, 스왑 등의 파생상품 거래 비용 등)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장집합투자기구 유동성위험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집합투자기구는 주식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산과 비교하여 거래량이 적을 수 있으며, 이는 매매체결을 지연시키거나 거래가격의 급변동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Prepayment)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아래 예시와 같이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증권 등은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며, 조기상환이 되는 경우 투자원본의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증권 등 예시: 수의상환사채(Callable Bond), 모기지증권 및 구조화된 모기지증권{분리이자(IO;Interest Only), Inverse IO, Floater, Inverse Floater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증권 등
증권차입매도 관련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증권의 차입 및 매도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투자전략을 통하여 초과수익을 추구하지만, 예상과 달리 차입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고, 증권차입거래비용 등으로 인하여 단순 매수전략을 구사하는 전략에 비하여 원금손실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권을 차입하여 매도한 경우, 이후 환매시 같은 증권을 매수하여 환급하여야 합니다. 증권의 가격은 이론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하므로 증권차입에 따른 손실도 이론적으로 무한합니다. 또한, 차입한 증권에 대해 대여기간 중에 대여자와 환수요청이 있을 경우, 급작스러운 증권의 매입 및 상환 등으로 인하여 포트폴리오 운용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권의 차입은 유동성이 풍부한 주식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나, 일시적으로 또는 시장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매도한 주식반환을 위한 주식 매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증권차입비용 및 증권차입에 따른 담보제공으로 인하여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종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특정 산업(업종)에 속하는 주식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시장 전체의 성과와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주식형 집합투자기구보다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 산업(업종)의 경제여건 등은 항상 급변동이 가능합니다.
리밸런싱 위험	국내외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등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의 가격이 급등락하여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경우 편입비 조절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수익추구를 위한 투자목적의 거래인지 또는 위험회피를 위한 헤지목적의 거래인지와는 상관없이 장외파생상품 등을 거래하는 경우 그 특정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금 전액의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거래상대방의 신용여건 등은 항상 급변동이 가능합니다.
모멘텀 전략 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과 관련된 ETF에 모멘텀 전략으로 투자합니다. 모멘텀 전략은 투자대상 자산에 대한 전망을 배제하고 성과 추이에 따른 추세를 추종하는 전략입니다. 따라서 특정자산에서 강한 모멘텀(추세)이 나타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이게 되어 특정자산에 편중하여 투자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 뚜렷한 모멘텀을 보이지 않고 횡보하는 경우 또는 시장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급락하는 경우 등의 국면에서는 모멘텀(추세) 투자전략의 특성 상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높은 매매회전율 위험	이 투자신탁은 모멘텀 전략을 활용함과 동시에 위험관리를 목적으로 편입비 조절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투자대상 자산이 등락을 거듭하거나 추세적 하락이 나타남에 따라 필연적으로 편입비중을 빈번하게 또는 크게 조정하게 되어 매매빈도 또는 매매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매매회전율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으며, 과도한 회전율은 높은 비용부담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후순위채권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후순위 채권(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채권)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신탁재산의 발행인의 파산시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장된 부동산/인프라 집합투자기구등의 가격변동위험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리츠(REITs)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인프라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인프라 관련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과 같이 거래되므로 주식과 같은 가격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츠의 가격은 부동산 경기 외에도 결제 상황, 수급 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좋은 상황에도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상장된 리츠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상장된 부동산/인프라 집합투자기구등의 유동성위험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리츠(REITs)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인프라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인프라 관련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는 소형주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유사한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주식시장 내의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주 주식 등에 비해 더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변동성 매매 전략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자산의 적정가격을 산출하고 시장가격(주가)과의 차이 발생시 저가매수, 고가매도의 기회를 포착하여 투자비중을 조절하는 변동성매매를 활용합니다. 주가 등락에 따라 주가 하락시 저가매수, 주가 상승시 고가매도 기회를 포착하지만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대상자산의 배당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가 상승에 따른 고가매도 기회가 포착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편입비중이 축소되어 배당 수익도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주가 등락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편입비중을 빈번하게 조정하게 됨에 따라 매매회전율이 증가할 수 있으며, 과도한 회전율은 높은 비용부담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높은 매매회전율	이 투자신탁이 수행하는 변동성매매전략 등 투자전략은 주가지수가 등락을 거듭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주식편입비중을 빈번하게 조정하게 됨에 따라 주식매매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매매회전율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으며, 과도한 회전율은 높은 비용부담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외국펀드 설립지 국가 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에 소재한 집합투자기구에도 투자하며, 이 경우 외국감독기관의 규제를 받습니다. 투자자들은 자국 금융감독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규제 보호 장치들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외국 세법에 의한 과세 위험	해외 증권은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되므로 특정 국가의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국가의 세법이 변경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외국운용사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에 소재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성과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인력의 전문성 및 투자 관련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크게 좌우됩니다. 또한,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으로 인하여 피투자펀드가 손실을 입거나 달리 투자하였을 경우 갖게 될 이익 창출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투자 관련 업무에 개입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산배분형투자위험	국내 또는 해외의 주식, 채권, 부동산투자증권, 상품(Commodity)관련 파생상품,

	파생상품 등 다양한 종류의 자산에 투자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라 하더라도 지역간 또는 자산의 종류간 시장상황에 따른 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적극적 자산배분전략을 수행하는 경우 앞서 설명한 각종 '집중투자위험'에 노출되며, 이는 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의 급변요인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산별 또는 지역적으로 충분히 분산하여 동시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투자전략이 투자위험을 반드시 낮춰준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커버드콜과 주식포트폴리오 괴리위험	커버드콜의 기초자산인 코스피200지수와 주식포트폴리오는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커버드콜 전략으로 의도하고자 했던 본래의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 할 위험이 있습니다.
신흥국가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투자시 신흥국가에 투자하게 되므로 앞서 설명된 국가위험 측면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신흥국가의 경우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투자수익률에 직/간접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등(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집합투자 기구의 가치변동에 영향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의사 결정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세부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자금 회수위험 (유동성위험)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 자산이 매각이 어려운 자산일 경우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어려워 환매에 제때 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도매각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환매청구시위험	환매를 청구하는 날과 환매대금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운용실무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실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예금이나 보험과는 달리 집합투자기구 운용구조는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실무상 오류는 기준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집합투자업자 등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해외투자의 경우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상 이종통화의 이용 등으로 인해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 운용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발생 가능성이 국내투자시보다 더 높습니다. 또한 국내에 투자하는 때와는 달리 시차에 의해 시장의 개/폐장 시간대가 다를 수 있으며, 그 차이로 인해 투자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규모변동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투자전략의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규모가 자산가치의 과도한 하락 또는 환매 등에 의해 적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투자전략의 수행 또는 충분한 분산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과세제도 변경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과세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자산의 예 : 해외투자시 환차손익, 채권투자시 이자수익 등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투자신탁 해지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이해상충(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와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 대주주 및 그 배우자, 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이하 같음) 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은 위 거래 또는 위 거래로 인하여 얻거나 받은 이익, 커미션 또는 보수에 대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에게 공시할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의 보수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잠재적 이해상충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회사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당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또한 잠재적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는 객관적 시장가격 또는 제3의 감정기관의 감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집합투자업자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이어야 합니다. 이상의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규정상의 제한을 준수합니다.
소프트 달러수수료(Soft-Dollar Commission)	집합투자업자는 소프트 달러 수수료(soft-dollar commission)를 발생시키는 거래가 고객에게 직접적이고 구별되는 이익이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시장의 관행을 엄중하게 준수하면서, 회사와 고객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소프트 달러 수수료 정책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으로 회사가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회사의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분석(Research)과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에 한정되며 출장, 숙박, 엔터테인먼트, 일반 사무용품 및 서비스, 사무실 및 기자재, 회원권, 임직원 보수 또는 직접 지불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프트 달러 수수료(soft-dollar commission) : 집합투자업자가 증권회사 등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 지급하는 것. 즉 집합투자업자가 증권회사 등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직접 현금으로 지불하는 대신 위탁매매거래 수수료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
해외납세 의무자 관련위험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하였습니다. 변동성이란 집합투자기구 수익률이 측정기간 내 평균수익률과 차이를 측정하는 통계적 방법(97.5% VaR)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며, 변동성 값이 클수록 수익률 변동성이 크고, 위험수준이 높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97.5% VaR)은 **13.03%** 로서 위험등급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추후 매결산 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위험등급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위험 수준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이 본인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등 급	1 (매우높은위험)	2 (높은위험)	3 (다소높은위험)	4 (보통위험)	5 (낮은위험)	6 (매우 낮은위험)
97.5% VaR	50%초과	50%이하	30%이하	20%이하	10%이하	1%이하

주1) 이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97.5% VaR값 13.03%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13.03%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 신청도 가능합니다.

(2)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구분	판매수수료 부과여부
종류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없음
종류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투자자	없음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없음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중 온라인 가입자	없음
종류C-P2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고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중 20억 이상 가입자	없음
종류O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중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 의한 가입자	없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나)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다만,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집합투자기구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의 17시[오후 5시] 이전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나. 환매

(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 청구도 가능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7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6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10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의 17시[오후 5시] 이전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4) 집합투자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집합투자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집합투자증권을 교부합니다.

(5)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7영업일전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8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연기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집합투자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기구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집합투자증권의 부분환매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②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이 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수익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8)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시 비용 미발생
X	X	O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아래 사항들은 모투자신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1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1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고·게시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investments.miraeasset.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이유	종류별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서로 다르게 산정됩니다.
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산정방법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도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모집합투자기구는 자집합투자기구와는 달리 보수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모집합투자기구와 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산정방법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은 평가시점에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평가시점에 기발행된 집합투자증권수로 나누어 산정됩니다.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평가방법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상장 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②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④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다만, 외화표시 상장채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전날에 당해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⑤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④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⑥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외국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상장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⑧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을 편입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한 평가방법에 의하거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평가방법 주요내용: 장외파생상품 평가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평가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적용하며 채권평가회사는 각 사의 독립적인 평가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가격을 산출
⑨기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도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집합투자재산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구성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담당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기타 위원장이 정하는 자로 구성
업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3.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7. 기타 관련 법규 또는 집합투자규약 등에 의해 위임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 수수료
종류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	-	-	-
종류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투자자	-	-	-	-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	-	-	-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중 온라인 가입자	-	-	-	-
종류C-P2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고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중 20억 이상 가입자	-	-	-	-
종류O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중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 의한 가입자	-	-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

* 가입자격의 자세한 사항은 제2부의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용(연간%)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총 보수	기타비용 주1)	총보수비용 주2)	동종유형 총 보수	합성총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종류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0.3	0.36	0.02	0.015	0.695	-	0.695	-	0.7462

종류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0.3	0.18	0.02	0.015	0.515	-	0.515	-	0.5662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0.3	0.3	0.02	0.015	0.635	-	0.635	-	0.6862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0.3	0.15	0.02	0.015	0.485	0.01	0.495	-	0.5462
종류C-P2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고액	0.3	0.03	0.02	0.015	0.365	-	0.365	-	0.4162
종류O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0.3	0.12	0.02	0.015	0.455	0.01	0.465	-	0.5162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

주1) 기타비용은 해당 투자신탁에서 직전 회계기간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설정일부터 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입니다. 한편 기타비용은 대체로 설정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초기에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비용비율의 기본적인 산출 개념은 클래스별로 매일 발생하는 기타비용의 합산액을 기준시점 평균순자산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비용발생시점보다 계산기준시점에서 평균순자산이 줄어들 경우 나누는 분모 대비 나누어지는 분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비율상 크게 나타나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비용 발생시 각 클래스에 동일 비율로 기타 비용이 적용되지만 위에서 언급한 계산 방식에서 발생하는 분자/분모의 상대적 변동과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클래스별로 기타 비용 비율이 다르게 표기되어 나타납니다. 한편,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증권 거래비용	17,807
금융비용	-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합성 총보수·비용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해당집합투자기구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을 알 수 없어,이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의 추정: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요 집합투자기구들의 보수/수수료는 약 0.0512%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는 추정치이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상기 기타비용, 총보수 비용 및 증권 거래 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비용을 반영하여 기재한 내용입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1,000원)

수익증권 종류	구분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71	145	224	390	86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76	156	240	419	932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65	133	204	357	79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70	144	221	385	857
종류C-P2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고액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37	76	117	205	45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42	87	134	234	520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50	103	159	278	61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55	114	176	307	682
종류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52	108	166	289	64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58	118	182	318	707
종류O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47	97	149	261	58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52	108	166	290	645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투자수익률은 보수 차감전 연간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종류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게 됩니다.
- "전체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집합투자기구재산과 관련된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지수사용료 등)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② 또한 집합투자기구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투자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아래의 집합투자기구 또는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 내용은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펀드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펀드 단계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사 등)가 투자자에게 펀드 소득 지급 시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이자·배당소득)에서 투자자별 외국납부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 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전환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한도 외로 추가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 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 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 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포함))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 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금계좌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300만 원 한도) 추가 세액공제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 거주자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 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 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 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 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 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출하는 경우) 분리과세한도	1,500만원 (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이 질병・부상 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이 승계 가능

수익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판매회사는 세제혜택을 위하여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이하"납입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매입자격위반 또는 투자한도초과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판매회사는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 2013년2월28일 이전에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 가입하거나 이 투자신탁으로 이전한 수익자의 동 투자신탁 수익증권 계좌는 소득세법시행령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로 보아 과세하되, 다음의 사항은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합니다.

[종전 가입자에 대한 특례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해지가산세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
해지가산세 면제사유	천재지변 저축자의 사망, 퇴직, 해외이주, 폐업 저축자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연금 외 수령 시 과세 (사망 시 제외)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사망으로 인한 해지시 과세	연금소득 5.5%(종합과세 가능)

* 13.1.1 이후 가입한 계좌의 특별 중도해지 사유 및 과세는 소득세법을 적용(단, 사망으로 인한 해지는 연금소득 5.5% 과세)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투자자에 대한 과세 - 퇴직연금계좌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한 금액의 12%를 세액공제
(단,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 중 연 900만원 이내의 금액)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수령시 연금수령 방법 등에 따라 과세

③ 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연금 수령, 연금외 수령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름.
- 연금 수령: 연금소득 과세
- 연금외 수령: 원천별 과세
 - 퇴직급여: 퇴직소득 과세
 - 퇴직외소득(자기부담금, 운용수익 등): 기타소득 과세

※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이 다음 경우에 해당할 경우 연금지급액의 5.5% ~ 3.3% (나이에 따라 변경)의 세율로 과세하는 분리과세 가능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 상기 경우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퇴직연금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수익자별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준가격 :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과표기준가격 :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 -"(2)투자자에 대한 과세" 참조 - 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 -"(2)투자자에 대한 과세" 참조 - 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투자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 적용 사례

예 1)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모두 수익이 발생하여 과세되는 경우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1100원	1100원
손익	(+)100원	(+)100원
세금		(+)100원*세율(15.4%) = 15.4원

예 2)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모두 손실이 발생하여 세금이 없는 경우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900원	900원
손익	(-)100원	(-)100원
세금		과세손익 (-)이므로 세금 '0'원

예 3) 기준가격상 손실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손해가 난 상태이지만, 과표기준가격상 수익이 발생하여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자산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900원	1100원
손익	(-)100원	(+)100원
세금		(+)100원*세율(15.4%) = 15.4원

예 4) 기준가격상 수익이 발생한 상태지만, 과표기준가격상 수익이 없어 세금이 없는 경우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1100원	900원
손익	(+)100원	(-)100원
세금		과세손익 (-)이므로 세금 '0' 원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미래에셋솔로몬단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국공채를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자 수익 등에 따른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채권	70% 이상(국공채 70% 이상)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다만, 주식관련사채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하로 합니다. <국공채> 다음 각목의 유가증권. 다만 라목 내지 바목의 기관은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에 한함. 가. 국채증권 나. 통화안정증권 다. 지방자치법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관이 발행한 채권 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기관이 발행한 채권 마.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이 발행한 채권 바.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
2	자산유동화증권	95%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3	어음	3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4	금리스왑거래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5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6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7	증권의 대여	50% 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8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총액의 5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9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0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11	환매조건부매수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3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4~8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	-

		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4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간(가목만 해당)
5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6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7	파생상품 투자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8	파생상품 투자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9	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2~7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국내 국공채에 70% 이상 투자합니다.

※ 국공채란?

다음 각목의 유가증권. 다만 라목 내지 바목의 기관은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에 한합니다.
가. 국채증권
나. 통화안정증권
다. 지방자치법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관이 발행한 채권
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기관이 발행한 채권
마.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이 발행한 채권
바.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

② 목표 듀레이션, 잔존만기 구성 등을 고려한 벤치마크 선정 및 복제를 통한 운용전략을 기본으로 하되, 시장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초과수익전략을 병행하여 운용합니다.

③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수익 증권 등 기타 증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채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Customized KIS국공채지수(3M~3Y)

<KIS채권종합지수: 한국의 KIS채권평가에서 작성 발표하는 채권지수>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를 위해 상기 지수가 비교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상기지수는 KIS채권종합지수의 종목 중 국고채 통안채 특수채 산금채 등으로 구성한 Customized지수로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설정이후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2.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국공채를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채권	70% 이상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다음 각목의 유가증권을 "국공채"라하며 국공채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 투자함. 다만 라목 내지 바목의 기관은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에 한함. 가. 국채증권 나. 통화안정증권 다. 지방자치법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관이 발행한 채권 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기관이 발행한 채권 마.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이 발행한 채권 바.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
2	자산유동화증권	3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3	어음	3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1 이상이어야 한다.)
4	금리스왑거래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5	집합투자증권등	3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6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7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8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이나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9	증권의 차입	20% 이하	증권의 차입
10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1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예치주2)		운용.
12	지분증권인 주식등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등을 취득할 수 있음.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3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4~9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상기 '증권의 차입'은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음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4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가목만 해당)
5	파생상품 투자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6	파생상품 투자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7	파생상품 투자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8	파생상품 투자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9	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2~7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국내 국공채에 70% 이상 투자합니다.

※ 국공채란?
다음 각목의 유가증권. 다만 라목 내지 바목의 기관은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에 한합니다.
가. 국채증권
나. 통화안정증권
다. 지방자치법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관이 발행한 채권
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기관이 발행한 채권
마. 특별법에 의한 특수공공법인이 발행한 채권
바.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채권

② 목표 듀레이션, 잔존만기 구성 등을 고려한 벤치마크 선정 및 복제를 통한 운용전략을 기본으로 하되, 시장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다양한 초과수익전략을 병행하여 운용합니다.

③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수익 증권 등 기타 증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채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Customized KIS 국공채지수

<KIS 채권종합지수 : 한국의 KIS채권평가에서 작성 발표하는 채권지수>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를 위해 상기 지수가 비교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3. 미래에셋단기채알파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일부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채권	9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 등
2	주식	30% 이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3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4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5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	금리스왑거래	보유증권총액의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7	환매조건부매도	보유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8	증권의 대여	보유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9	증권의 차입	20% 이하	증권의 차입
10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1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4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5~9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상기 '증권의 차입'은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음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	-

		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4	동일법인발행주식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5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가목만 해당)
6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7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8	파생상품 투자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9	파생상품 투자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10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11	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2~8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에 90% 이하로 투자하며 국내 주식에 30% 이하로 투자합니다.

②국공채, 통안채 등의 잔존 만기가 1년 내외인 단기 국내 채권 중심으로 운용하며, 다음과 같은 투자전략으로 주식에도 일부 투자합니다.

-페어트레이딩(Pair Trading) 전략: 계량 모델에 기반하여 동일 기업의 우선주와 보통주간 롱숏(Long Short), 통계적으로 과거 오랜 기간 유사한 주가흐름을 보인 종목간 롱숏 등의 전략
-이벤트드리븐(Event Driven) 전략: 기업의 합병, 분할, 유상증자 등의 이벤트가 발생하여 차익거래 기회가 포착되는 경우 관련 종목간 롱숏 또는 공모주(IPO), 블록딜(Block Deal) 등에 투자하는 전략

③투자전략 및 운용규모 등을 감안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증권(ETF 포함), 파생상품 등에 일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 특성상 비교 가능한 지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4. 미래에셋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중 배당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주식	90% 이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1호의 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하며, 증권예탁증권의 경우 지분증권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
2	채권	40% 미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등을 포함하여)40% 미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	기업어음증권 및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어음등을 주된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등을포함하여) 40% 미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5	집합투자증권등	40% 미만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6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
7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8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9	증권의 차입	20% 이하	①~⑤에 의한 증권의 차입
10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1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4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5~9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상기 '증권의 차입'은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음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	-

		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4	동일법인발행주식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5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가목만 해당)
6	파생상품 투자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7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8	파생상품 투자	장내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2~6, 8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90% 범위 내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합니다. 특히, 국내주식 중 배당성향이 높을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우선주 등)에 주로 투자하여 배당수익을 추구합니다.

배당성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위한 종목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가총액
2. 배당의 안정성

3. 투자종목의 유동성(거래량)

또한, 이 투자신탁은 위 지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선정한 주식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콜옵션(Call option)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Covered call, 아래 설명 참조)을 활용하여 주가하락 위험을 부분적으로 방어하면서 콜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 확보를 통해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KOSPI 200 지수를 기초 지수로 하는 콜옵션을 매도하여 추가적인 프리미엄 누적 및 안정적인 성과 개선을 추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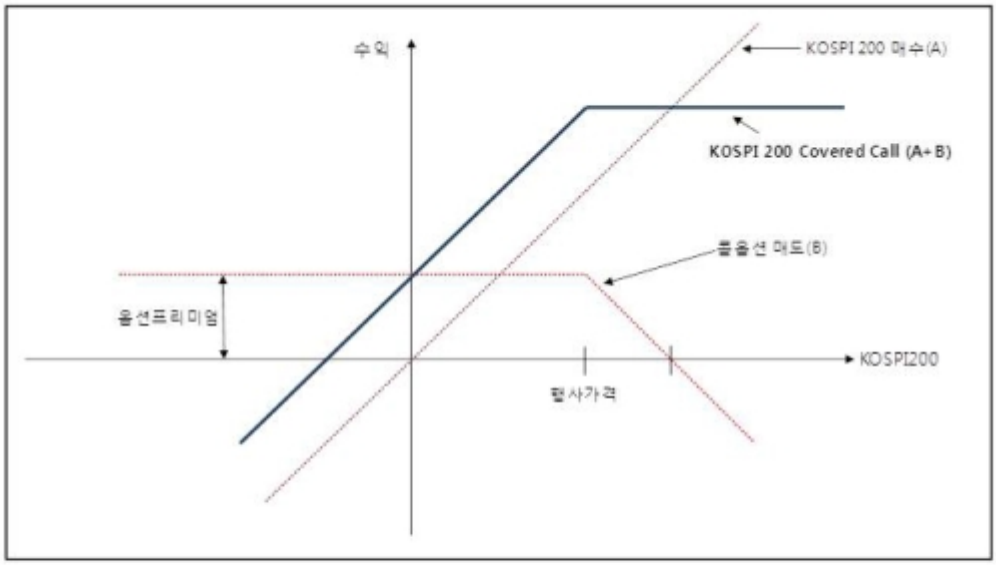
옵션 매도 전략은 기본적으로 현재 주가 지수의 105% 수준인 외가격(OTM)을 행사가로 하는 최근월물 콜옵션 매도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옵션의 만기, 행사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옵션 프리미엄과 리밸런싱 일정 등을 감안하여 익월물 옵션 또는 주간 옵션도 일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의 상승이 예상될 경우 옵션 매도 비중을 낮추고 행사가를 높이게 되며, 시장의 하락이 예상될 경우 옵션 매도 비중을 높이고 행사가를 낮춰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다만, 주식 포트폴리오가 옵션의 기초지수인 KOSPI 200 지수의 추종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KOSPI 200 지수와의 수익률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대했던 커버드콜 전략의 성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커버드콜(Covered Call)전략이란?
주식현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동시에 동일한 규모의 콜옵션을 월단위로 매도하는 커버드콜 투자전략을 활용하여, 주식시장이 하락하거나 완만하게 상승하는 경우 콜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을 확보합니다. 반면, 주식시장이 급등하는 경우 수익이 한정되는 수익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 주가 급등시: 현물 포트폴리오 보유 부분에서 큰 폭의 수익이 발생하나, 콜옵션 매도 부분의 손실로 인하여 투자신탁 전체의 수익률은 일정수준으로 제한됨
▶ 주가가 완만히 상승하거나 횡보할 경우: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 이외에 콜옵션 매도시 얻는 콜옵션 프리미엄 상당액만큼 수익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 주가 하락시: 현물 포트폴리오 보유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하지만, 콜옵션 프리미엄을 통해 손실의 부분적인 방어가 가능함

[커버드콜(Covered Call) 전략의 월단위 수익구조]



※ 위 그림은 투자자의 이해를 돕고자 KOSPI200 종목으로 구성되는 현물 및 선물 포트폴리오와 KOSPI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 매도를 활용한 커버드콜 전략을 단순화하여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KOSPI200 종목이 아닌, 배당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 위주로 현물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커버드콜 전략의 수익구조는 위의 그림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

※ 비교지수 : KOSPI200(70%) + MMI(30%)

<KOSPI200 : 한국거래소(KRX)가 작성하여 발표>
<MMI = 한국채권평가 단기금융지수(Money Market Index) (http://www.koreabp.com)>

-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즉 투자하는 주식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익이 발생하며, 투자하는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므로 주가가 하락하거나 횡보, 또는 완만히 상승할 경우 커버드콜 전략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할 경우 주가상승에 따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5. 미래에셋글로벌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모투자신탁(주식혼합)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주식	80% 이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1호의 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하며, 증권예탁증권의 경우 지분증권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2	채권	40% 미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3	자산유동화증권	40% 미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4	기업어음증권 및 어음등	40% 미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5	집합투자증권등	40% 미만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6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자산총액의 10%이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7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보유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8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보유 증권총액의 50%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9	증권의 차입	20% 이하	①~⑤에 의한 증권의 차입
10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1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

	산		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4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5~9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상기 '증권의 차입'은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음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4	동일법인발행주식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5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가목만 적용 제외 해당)
6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7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8	파생상품 투자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9	파생상품 투자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10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2~8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글로벌 주식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특히, 글로벌 고배당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추구합니다.

글로벌 고배당주 선정 기준과 최종 포트폴리오 구성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배당주 선정 기준: MSCI AC World 인덱스 구성 종목 중에서 배당의 성장성과 배당성향, 현금흐름의 안정성 등을 점검하여 배당주를 선정합니다.
- 위 고배당주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 중에서 기초자산으로 콜옵션이 상장되어 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최종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다만, 펀드 규모가 적정 운용 규모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글로벌배당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집합투자증권(ETF)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종목별 동일비중 원칙으로 투자하되 시장상황 및 국가/섹터 비중을 감안하여 조정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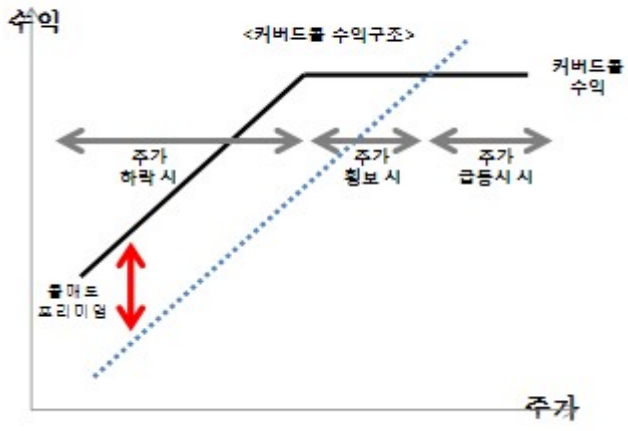
② 또한, 이 투자신탁은 위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선정한 주식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콜옵션(Call option)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Covered call, 아래 설명 참조)을 활용하여 주가하락 위험을 부분적으로 방어하면서 콜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 확보를 통해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MSCI AC World 지수를 기반으로 고배당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함과 동시에 동 지수를 구성하는 각 국가의 대표 주가 지수(S&P 500, EuroStoxx50, Nikkei225, HSCEI 등)을 기초 지수로 하는 콜옵션을 매도하여 추가적인 프리미엄 누적 및 안정적인 성과 개선을 추구합니다.

※ 커버드콜(Covered Call)전략이란?
주식현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동시에 동일한 규모의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투자전략을 활용하여, 주식시장이 하락하거나 완만하게 상승하는 경우 콜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을 확보합니다. 반면, 주식시장이 급등하는 경우 수익이 한정되는 수익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③ 옵션 매도 전략은 기본적으로 월간 옵션을 활용하되 시장 상황과 국면에 따라 유동적으로 옵션 매도 여부, 수량, 행사가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주간 옵션 또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 단기적으로 시장의 상승이 예상될 경우 옵션 매도 비중을 낮추고 행사가를 높이게 되며, 시장의 하락이 예상될 경우 옵션 매도 비중을 높이고 행사가를 낮춰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다만, 주식 포트폴리오와 MSCI AC World 지수 간의 수익률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대했던 커버드콜 전략의 성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커버드콜(Covered Call) 전략의 수익구조]



▶ 주가 급등시: 현물 포트폴리오 보유 부분에서 큰 폭의 수익이 발생하나, 콜옵션 매도 부분의 손실로 인하여 투자신탁 전체의 수익률은 일정수준으로 제한됨
▶ 주가가 완만히 상승하거나 횡보할 경우: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 이외에 콜옵션 매도시 얻는 콜옵션 프리미엄 상당액만큼 수익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 주가 하락시: 현물 포트폴리오 보유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하지만, 콜옵션 프리미엄을 통해 손실의 부분적인 방어가 가능함

※ 비교지수 : 없음

*참조지수:MSCI AC World Index*50%+Call금리*50%
이 투자신탁은 주식현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동시에 동일한 규모의 콜 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데에 반해 현재 시장에는 이를 반영할 적절한 지수가 존재하지 않아 비교지수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를 위해 위의 지수가 참조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요 대상 국가 현황 (CIA 및 Bloomberg 기준)

미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5 년 , 십억 US$)	30,762.0			인구 (2025년 추정, 만 명)	34,178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3년	2024년	2025년	수출 (2025 년 , 십억 US$)	3,429.8
	2.9	2.8	2.1	수입 (2025 년 , 십억 US$)	4,361.7
주요산업	기술, 금융, 자동차, 의료, 에너지, 농업 등				

중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18,744.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41,604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3,793.0
	3.1	5.4	5.0	수입 (2024 년 , 십억 US$)	3,254.0
주요산업	광업 및 광업 가공, 채광, 철강, 석탄, 군수, 시멘트, 섬유, 소비재 등				

투자목적, 투자전략에 특정국가 등으로 투자지역을 한정한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상기 국가들은 투자 가능 국가 중 일부를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기 국가들이 아닌 국가에도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상기 국가들에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② 환위험관리

구분	세부 내용
환헤지 여부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환헤지 방법	환헤지 전략 실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 헤지비율	이 투자신탁은 헤지 비용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으로 환헤지 실행이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80% 수준의 환헤지를 목표로 합니다. 다만, 보유 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및 헤지 비용 등 투자신탁의 운용 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헤지 장점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환율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낮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상쇄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게 해 줍니다. 나아가, 국내보다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이익이 발생할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 단점	환헤지 효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장점이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이 이에 상응하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즉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상쇄시켜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국내보다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헤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헤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선물환 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환헤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즉 투자하는 주식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익이 발생하며, 투자하는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므로 주가가 하락하거나 횡보, 또는 완만히 상승할 경우 커버드콜 전략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할 경우 주가상승에 따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6. 미래에셋밸런스롱숏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주식	50% 미만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2	채권	9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5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6	금리스왑거래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7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8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9	증권의 대여	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10	증권의 차입	20% 이하	증권의 차입
11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2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단, 대규모 환매청구의 발생, 모투자신탁의 환매제한 등의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모투자신탁의 투자비율이 90% 미만으로 축소될 수 있음)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5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6~10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상기 '증권의 차입'은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음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 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미만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	-

		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4	동일법인발행주식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5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가목만 해당)
6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7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8	파생상품 투자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9	파생상품 투자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10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11	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2~8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국내 주식에 50%미만으로 투자하고, 채권에 90% 이하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② 주식 롱숏 전략과 인덱스헤지 전략을 주요 투자전략으로 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롱온리/숏온리 전략도 유연하게 병행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전략에 따른 Net Exposure(롱 포지션에서 숏 포지션을 차감한 비율)는 기본적으로 -20~+20% 수준을 목표로 하지만 이는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식 롱숏(Long/Short) 전략: 장기 성장 트렌드의 수혜/비 수혜 종목(바스켓) 간 롱(Long,매수)/숏(Short,매도) 포지션 대비를 통해 구조적 변화에 따른 상대적 수익 추구
▷ 인덱스헤지(Index Hedge) 전략: 시장 내 성장 섹터/테마에 대한 선별적 포지셔닝과 시장지수 매도전략을 병행하여 시장 대비 초과 수익 추구
▷ 롱온리/숏온리(Long only/Short only) 전략: 장기적으로 가치상승/하락이 예상되는 자산에 대해 매수전략 만(Long only)의 포지션 또는 매도전략 만(Short only)의 포지션 보유 전략을 구사하여 수익 추구
③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국내 채권 등의 다른 증권 및 현금 등에 투자할 수도 있으며,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증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의 특징상 적절한 비교가능 지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지수를 참조지수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참조지수: KIS국고채 1~2년(80%) + KOSPI(20%)
<KIS국고채1~2년 : KIS채권평가에서 작성하여 발표하는 채권지수>
<KOSPI: 한국거래소(KRX)가 작성하여 발표하는 주식지수>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7. 미래에셋AI글로벌모멘텀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가. 피투자펀드의 투자 필요성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하여 모멘텀 전략에 기반하여 최근 성과가 우수하고 자산군 내 상대적 성과도 우수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합니다. 주식/채권/기타(원자재, 부동산 등)의 다양한 자산군 내에서도 상호간 낮은 상관관계를 가진 피투자펀드들을 선택 및 동적 배분하여 투자함으로써, 비교적 제한된 위험을 감수하면서 절대적인 수익 창출을 추구합니다.

나. 피투자펀드의 선정 기준
피투자펀드의 운용사/운용팀/운용프로세스/지원 조직 등에 대한 다양한 정량/정성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분석을 마친 뒤, 아래 기준에 부합되는지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 패시브형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추종지수의 구성 방법론이 투명하고 합리적인지
- 패시브형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추종지수와의 추적오차가 낮은지
-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거래하기에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되고 총 보수가 낮은지
- 다양한 시장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우수한 투자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지

다. 펀드 실사
펀드 실사는 피투자펀드들이 상장지수펀드가 대부분인 만큼, 펀드에 대한 상세 자료 및 정보 등을 비교적 용이하고 신속히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해당 ETF의 운용사와 유동성 공급자들을 통해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정보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집합투자증권등	50% 이상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2	주식	50% 미만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1호의 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하며, 증권예탁증권의 경우 지분증권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3	채권	50% 미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4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5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

			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6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일반상품・부동산・통화나 주식・채권・일반상품・부동산・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및 이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7	금리스왑거래	보유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8	환매조건부매도	보유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9	증권의 대여	보유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10	증권의 차입	20% 이하	①~⑤에 의한 증권의 차입
11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2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5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6~10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상기 '증권의 차입'은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음

※피투자펀드의 종류와 특성 (2026.04.30 기준)

펀드명	주된 투자대상	운용사	설정일	운용 규모(억원/백만불)	
Invesco Optimum Yield Diversified Commodity Strategy No K-1 ETF	원자재	Invesco	2014-11-07	6,363	(백만불)
iShares Gold Trust	원자재	BlackRock Inc	2005-01-28	71,530	(백만불)
State Street SPDR S&P 500 ETF Trust	미국 주식	State Street Corp	1993-01-22	738,374	(백만불)
iShares iBoxx USD High Yield Corporate Bond ETF	해외 회사채	BlackRock Inc	2007-04-11	16,904	(백만불)
iShares U.S. Real Estate ETF	미국 부동산	BlackRock Inc	2000-06-19	4,182	(백만불)
Vanguard Total World Stock ETF	해외 주식	Vanguard Group Inc	2008-06-26	71,557	(백만불)
Invesco QQQ Trust Series 1	미국 주식	Invesco	1999-03-10	439,774	(백만불)
iShares MSCI Japan ETF	해외 주식	BlackRock Inc	1996-03-18	20,636	(백만불)
Vanguard FTSE Emerging Markets ETF	신흥 시장 주식	Vanguard Group Inc	2005-03-10	119,920	(백만불)
iShares J.P. Morgan USD Emerging Markets Bond ETF	신흥 시장 채권	BlackRock Inc	2007-12-19	14,408	(백만불)
iShares 7-10 Year Treasury Bond ETF	미국 채권	BlackRock Inc	2002-07-26	48,107	(백만불)
Vanguard FTSE Developed Markets ETF	해외 주식	Vanguard Group Inc	2007-07-26	221,138	(백만불)
Vanguard FTSE Europe ETF	해외 주식	Vanguard Group Inc	2005-03-10	29,883	(백만불)
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	미국 채권	BlackRock Inc	2002-07-26	42,596	(백만불)
iShares Core U.S. Aggregate Bond ETF	미국 채권	BlackRock Inc	2003-09-26	135,301	(백만불)
iShares 1-3 Year Treasury Bond ETF	미국 채권	BlackRock Inc	2002-07-26	25,123	(백만불)
TIGER 200	국내 주식	미래에셋자산운용	2008-04-03	87,774	(억원)
TIGER 미국S&P500	미국 주식	미래에셋자산운용	2020-08-07	165,475	(억원)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	해외 채권	미래에셋자산운용	2019-07-24	5,453	(억원)
TIGER CD금리투자KIS(합성)	국내 채권	미래에셋자산운용	2020-07-07	45,071	(억원)

※ 상기는 포트폴리오 예시이며 향후 거시 경제 및 시장 환경 변화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4	동일법인발행주식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5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가목 및 나목만 해당)
6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예외)	상기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제한은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한되는 운용관련 규정입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중 가목 및 나목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지구와 비슷한 것으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법 시행령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①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②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종목 이상이고, 각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 가목을 적용할 때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7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예외)	☞ 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집합투자기구가 같은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집합투자재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투자방침과 투자전략이 상이한 복수의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에 투자할 것 2.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투자전략을 활용할 것 3.집합투자업자가 본인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출 것 ☞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4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다음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1.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2.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3.「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포함한다)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8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9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10	파생상품 투자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11	파생상품 투자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12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13	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

		투자하는 행위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2~10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ETF 등)에 50% 이상 투자하며, 모멘텀 전략을 활용하여 최근 성과가 우수하고 상대적 성과도 우수한 다양한 자산 및 전략의 ETF에 분산 투자하여 장기가치상승을 추구합니다.

②국내외에 상장된 ETF를 대상으로 각 ETF의 규모 및 유동성, ETF간의 상관관계 및 분산효과 그리고 투자비용을 감안하여 선정한 국내외 주식, 채권, 기타(원자재,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하는 ETF로 투자 유니버스를 구성합니다.

③투자 유니버스에 포함된 ETF의 모멘텀 분석(성과 추이에 따른 추세 추종 전략)을 위하여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알고리즘 모델을 활용합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모멘텀 전략에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되는 다양한 시장 데이터들(총수익률, 변동성, 금리스프레드, 자산간 상관관계 등)을 입력값으로 하며 이에 기반해 최적의 모멘텀 전략을 위한 자산별 모멘텀 스코어 및 포트폴리오 구성에 필요한 주요 스코어를 산출하도록 신경망을 진화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활용합니다.

④AI 알고리즘 모델을 통해 산출된 모멘텀 스코어 상위에 있는 ETF를 투자대상으로 하되 AI 리스크(과최적화, 예측오차, 고려하지 못하는 변수들 존재 등)를 고려하여 리스크관리 및 포트폴리오 분산 관점에서 최종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⑤AI 알고리즘 모델 및 포트폴리오 구성 방식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투자 종목 및 투자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리밸런싱을 수행합니다.

⑥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투자한도 내에서 ETF 외의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80조제5호의4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본인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50%를 초과하여 투자하지는 않아 법 시행령 제80조제5호의4 다목(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출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투자펀드의 종류와 특성

펀드명	주된 투자대상	운용사	설정일	운용 규모(억원/백만불)	
Invesco Optimum Yield Diversified Commodity Strategy No K-1 ETF	원자재	Invesco	2014-11-07	6,363	(백만불)
iShares Gold Trust	원자재	BlackRock Inc	2005-01-28	71,530	(백만불)
State Street SPDR S&P 500 ETF Trust	미국 주식	State Street Corp	1993-01-22	738,374	(백만불)
iShares iBoxx USD High Yield Corporate Bond ETF	해외 회사채	BlackRock Inc	2007-04-11	16,904	(백만불)
iShares U.S. Real Estate ETF	미국 부동산	BlackRock Inc	2000-06-19	4,182	(백만불)
Vanguard Total World Stock ETF	해외 주식	Vanguard Group Inc	2008-06-26	71,557	(백만불)
Invesco QQQ Trust Series 1	미국 주식	Invesco	1999-03-10	439,774	(백만불)
iShares MSCI Japan ETF	해외 주식	BlackRock Inc	1996-03-18	20,636	(백만불)
Vanguard FTSE Emerging Markets ETF	신흥 시장 주식	Vanguard Group Inc	2005-03-10	119,920	(백만불)
iShares J.P. Morgan USD Emerging Markets Bond ETF	신흥 시장 채권	BlackRock Inc	2007-12-19	14,408	(백만불)
iShares 7-10 Year Treasury Bond ETF	미국 채권	BlackRock Inc	2002-07-26	48,107	(백만불)
Vanguard FTSE Developed Markets ETF	해외 주식	Vanguard Group Inc	2007-07-26	221,138	(백만불)
Vanguard FTSE Europe ETF	해외 주식	Vanguard Group Inc	2005-03-10	29,883	(백만불)
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	미국 채권	BlackRock Inc	2002-07-26	42,596	(백만불)
iShares Core U.S. Aggregate Bond ETF	미국 채권	BlackRock Inc	2003-09-26	135,301	(백만불)
iShares 1-3 Year Treasury Bond ETF	미국 채권	BlackRock Inc	2002-07-26	25,123	(백만불)
TIGER 200	국내 주식	미래에셋자산운용	2008-04-03	87,774	(억원)
TIGER 미국S&P500	미국 주식	미래에셋자산운용	2020-08-07	165,475	(억원)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	해외 채권	미래에셋자산운용	2019-07-24	5,453	(억원)
TIGER CD금리투자KIS(합성)	국내 채권	미래에셋자산운용	2020-07-07	45,071	(억원)

※ 각 피투자펀드에 최대 20%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최대 30%, 예외 적용되는 상장지수펀드의 경우 최대 100%) 투자하는 규정과 동일 운용사에 대해서는 최대 50% (단, 100%까지 편입가능한 예외 ETF는 산정 제외)를 투자하는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투자 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자산/자산군에 잘 분산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편입 비중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 상기는 포트폴리오 예시이며 향후 거시 경제 및 시장 환경 변화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없음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특성상 이 투자신탁의 성과와 비교 가능한 지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요 대상 국가 현황 (CIA 및 Bloomberg 기준)

미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5 년 , 십억 US$)	30,762.0			인구 (2025년 추정, 만 명)	34,178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3년	2024년	2025년	수출 (2025 년 , 십억 US$)	3,429.8
	2.9	2.8	2.1	수입 (2025 년 , 십억 US$)	4,361.7
주요산업	기술, 금융, 자동차, 의료, 에너지, 농업 등				

영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3,644.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6,845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1,117.0
	4.8	0.4	1.1	수입 (2024 년 , 십억 US$)	1,158.0
주요산업	공작 기계, 전자, 자동화 기계, 철도설비, 선박, 항공기 등				

브라질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2,179.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22,005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388.0
	3.0	3.2	3.4	수입 (2024 년 , 십억 US$)	377.0
주요산업	섬유, 신발, 화학, 시멘트, 목재, 철 등				

중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18,744.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41,604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3,793.0
	3.1	5.4	5.0	수입 (2024 년 , 십억 US$)	3,254.0
주요산업	광업 및 광업 가공, 채광, 철강, 석탄, 군수, 시멘트, 섬유, 소비재 등				

인도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3,919.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40,912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822.0
	7.6	9.2	6.5	수입 (2024 년 , 십억 US$)	923.0

주요산업	섬유, 화학, 식품 가공, 철강, 운송 장비, 시멘트, 광업, 석유, 기계, 소프트웨어, 제약 등

한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1,713.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5,208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835.0
	2.6	1.4	2.0	수입 (2024 년 , 십억 US$)	758.0
주요산업	전자, 통신, 자동차, 화학, 조선, 철강 등				

일본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4,026.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2,320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922.0
	0.9	1.5	0.1	수입 (2024 년 , 십억 US$)	965.0
주요산업	자동차, 전자, 기계, 철강, 비철 금속, 선박 등				

호주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1,752.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2,676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425.0
	4.2	3.4	1.4	수입 (2024 년 , 십억 US$)	405.0
주요산업	광업, 운수장비, 식품가공, 화학 등				

독일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4,660.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8,411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1,949.0
	1.4	-0.3	-0.2	수입 (2024 년 , 십억 US$)	1,774.0
주요산업	섬유, 석탄, 시멘트 ,자동차, 기계, 화학, 전자, 식음료, 선박 등				

투자목적, 투자전략에 특정국가 등으로 투자지역을 한정한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상기 국가들은 투자 가능 국가 중 일부를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기 국가들이 아닌 국가에도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상기 국가들에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위험관리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 동일 ETF에 대해 3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위험관리를 위해, 매달 운용 보고서 및 보유 내역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특히, 상장지수펀드는 매일 PDF(Portfolio Deposit File, 자산구성내역)가 공시되므로 필요시 수시로 검토합니다. 운용 보고서에는 포트폴리오 개요, 자산구성현황, 펀드 성과, 시장 분석, 운용 경과 및 성과 분석 등이 포함되어 잇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운용 정보가 필요한 경우 피투자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에 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통해 피투자펀드에 대한 위험관리에 활용합니다.

② 환위험관리

구분	세부 내용
환헤지 여부	이 투자신탁은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USD 등)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참고(자투자신탁의 환헤지 여부) - 미래에셋AI글로벌모멘텀혼합자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 미래에셋합리적인AI글로벌모멘텀혼합자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환헤지 방법	환헤지 전략 실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 헤지비율	이 투자신탁은 헤지 비용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USD 등)에 대해서 80% 이상 수준으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이종통화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보유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헤지 비용 및 통화 별 비중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투자신탁의 환헤지 여부) - 미래에셋AI글로벌모멘텀혼합자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 미래에셋합리적인AI글로벌모멘텀혼합자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환헤지 장점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환율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낮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상쇄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게 해 줍니다. 나아가, 국내보다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이익이 발생할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 단점	환헤지 효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장점이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이 이에 상응하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즉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상쇄시켜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국내보다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헤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헤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선물환 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환헤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8. 미래에셋밸런스리츠부동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피투자펀드의 투자 필요성
국내 상장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미국, 일본, 싱가폴, 홍콩, 호주 등 REITs를 포함한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 발달된 지역에 상장되어 있는 다양한 집합투자증권을 선별 투자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동시에 투자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예정입니다.

(2)피투자펀드의 선정 기준
- MSCI 선진국 및 이머징 시장으로 분류된 국가에 상장
-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 운용사의 운용 경험 3년 이상
-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 시가총액 (또는 순자산)이 USD 1억 이상

(3)펀드 실사
- 공시확인: 투자대상은 각 국가를 대표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으로 주요 사항의 경우 거래소와 각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운용보고서 확인: 각 집합투자증권의 운용 현황과 보유중인 부동산에 대한 세부 정보는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보고서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 커뮤니케이션: 필요시 현지 운용사 및 REITs 회사와의 커뮤니케이션, 혹은 별도 자료 요청을 통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집합투자증권등	50% 초과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다만, 법 제229조에 따른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초과로 합니다.
2	주식	50% 이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3	채권	5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4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5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6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부동산・주식・채권・통화나 부동산・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7	금리스왑거래	보유증권총액의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8	환매조건부매도	보유증권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9	증권의 대여	보유증권총액의 50% 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10	증권의 차입	20% 이하	①~⑤에 의한 증권의 차입
11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2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단, 대규모 환매청구의 발생, 모투자신탁의 환매제한 등의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40% 이하의 범위내에서 20%를 초과할 수 있음)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5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7~10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상기 '증권의 차입'은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음

※피투자펀드의 종류와 특성

펀드명	주된 투자대상	운용사	설정일	운용 규모 (억원/백만불)
맵스미국11호	부동산	미래에셋자산운용	2017-09-01	397
이리츠코크렙	부동산	코람코자산신탁	2018-06-27	3,107
맥쿼리인프라	인프라	맥쿼리자산운용	2006-03-15	54,789
맵스리얼티	부동산	미래에셋자산운용	2007-04-09	6,350
신한알파리츠	부동산	신한리츠운용	2018-08-08	6,954
롯데리츠	부동산	롯데AMC	2019-10-30	14,015
제이알글로벌리츠	부동산	제이알투자운용	2020-08-07	3,713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부동산	코람코자산신탁	2020-08-31	4,463
미래에셋맵스리츠	부동산	미래에셋자산운용	2020-08-05	627
ESR켄달스퀘어리츠	부동산	ESR켄달스퀘어리츠운용	2020-12-23	10,643
디앤디플랫폼리츠	부동산	디앤디인베스트먼트	2021-08-27	2,793
SK리츠	부동산	SK리츠운용	2021-09-14	17,790
NH올원리츠	부동산	NH농협리츠운용	2021-11-18	1,755
신한서부티엔디리츠	부동산	신한리츠운용	2021-12-10	2,586
KB발해인프라	인프라	KB자산운용	2024-11-29	12,279
코람코더원리츠	부동산	코람코자산신탁	2022-03-28	3,676
KB스타리츠	부동산	KB자산운용	2022-10-06	3,418
삼성FN리츠	부동산	삼성SRA자산운용	2023-04-10	5,044
한화리츠	부동산	한화자산운용	2023-03-27	9,196
Crown Castle Inc	부동산	Crown Castle Inc	1998-08-17	39,046
Digital Realty Trust Inc	부동산	Digital Realty Trust Inc	2004-10-29	61,988
Equity Residential	부동산	Equity Residential	1993-08-11	23,865
Global Net Lease Inc	부동산	Global Net Lease Inc	2015-06-02	2,018
Omega Healthcare Investors Inc	부동산	Omega Healthcare Investors Inc	1992-08-06	14,267
Simon Property Group Inc	부동산	Simon Property Group Inc	1993-12-13	66,242
VICI Properties Inc	부동산	VICI Properties Inc	2018-02-01	32,287

※ 개별 피투자펀드의 투자 비중은 최대 20%이며, 운용 전략상 순자산의 최소 50%, 최대 100%를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 상기는 포트폴리오 예시이며 향후 거시 경제 및 시장 환경 변화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미만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	-

		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4	동일법인발행주식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5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가목 및 나목만 해당)
6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예외)	상기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제한은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한되는 운용관련 규정입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중 가목 및 나목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지구와 비슷한 것으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법 시행령 제251조제2항	-

		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①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②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종목 이상이고, 각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가목을 적용할 때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7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8	파생상품 투자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9	파생상품 투자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10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2~8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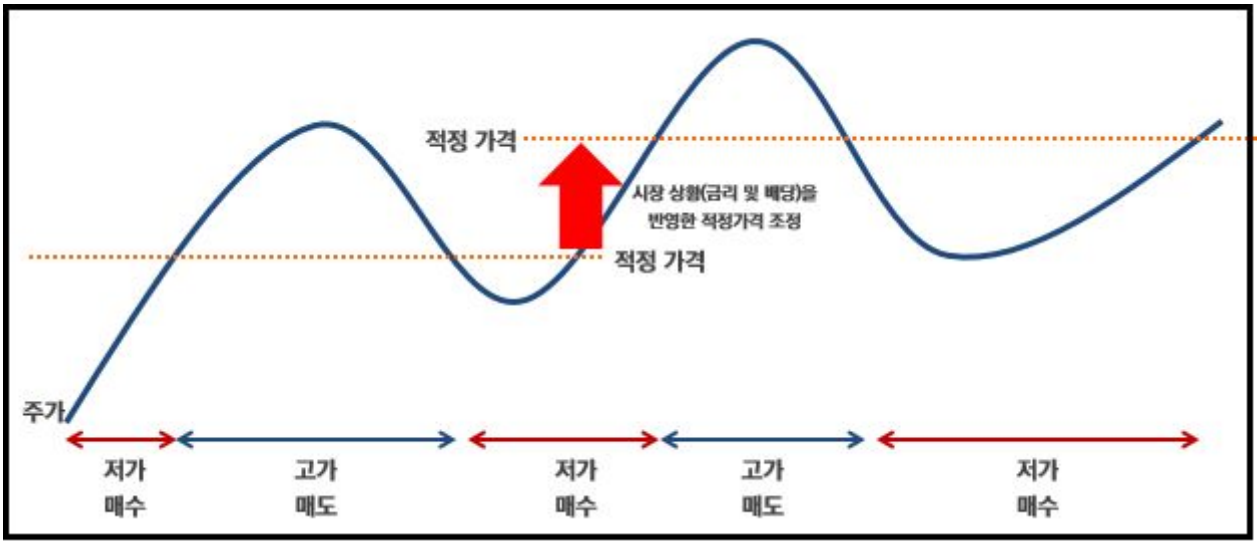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REITs 포함)에 50% 초과하여 투자합니다.

② 국내 상장 리츠(REITs) 및 상장 부동산펀드에 주로 투자하며 투자대상자산의 유동성 확대와 추가 수익 기회 등을 고려하여 일부 상장 인프라펀드 및 해외 상장 리츠(REITs)에도 투자합니다.

③ 상장 리츠(REITs)/ 상장 부동산펀드 등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편입비는 80%를 기준으로 최소 65%에서 최대 95%를 목표로 변동성매매를 수행하며, 부동산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을 편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채권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인컴수익을 누적할 계획입니다.

<변동성 매매 전략>
배당할인모형 등을 기반한 정량적평가와 리스크를 감안한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적정가격을 산출하고 시장가격(주가)과의 차이 발생시 저가매수, 고가매도의 기회를 포착하여 투자비중을 조절하는 전략



* 배당할인모형: 투자대상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배당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의 합으로 적정 가격을 산출하는 모형

④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투자한도 내에서 집합투자증권 외의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피투자펀드 개요

펀드명	설정지 국가	외국감독기관	투자비중(%)	주요 투자전략
맵스미국11호	한국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0.77	배당 전략
이리츠코크렙	한국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2.16	배당 전략
맥쿼리인프라	한국	금융감독원	18.73	배당 전략
맵스리얼티	한국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1.61	배당 전략
신한알파리츠	한국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1.50	배당 전략
롯데리츠	한국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14.82	배당 전략
제이알글로벌리츠	한국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0.94	배당 전략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한국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4.05	배당 전략
미래에셋맵스리츠	한국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0.69	배당 전략
ESR켄달스퀘어리츠	한국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9.55	배당 전략
디앤디플랫폼리츠	한국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2.35	배당 전략
SK리츠	한국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17.88	배당 전략
NH올원리츠	한국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1.36	배당 전략
신한서부티엔디리츠	한국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4.15	배당 전략
KB발해인프라	한국	금융감독원	2.32	배당 전략
코람코더원리츠	한국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4.03	배당 전략
KB스타리츠	한국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0.01	배당 전략
삼성FN리츠	한국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1.83	배당 전략
한화리츠	한국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9.05	배당 전략
Crown Castle Inc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	0.03	배당 전략
Digital Realty Trust Inc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	0.05	배당 전략
Equity Residential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	0.02	배당 전략
Global Net Lease Inc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	0.00	배당 전략
Omega Healthcare Investors Inc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	0.01	배당 전략
Simon Property Group Inc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	0.06	배당 전략
VICI Properties Inc	미국	SEC (증권거래위원회)	0.01	배당 전략

※ 상기는 포트폴리오 예시이며 향후 거시 경제 및 시장 환경 변화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유동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전략 특성상 비교 가능한 지수가 존재하지 않아 비교지수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요 대상 국가 현황 (CIA 및 Bloomberg 기준)

미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5 년 , 십억 US$)	30,762.0			인구 (2025년 추정, 만 명)	34,178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3년	2024년	2025년	수출 (2025 년 , 십억 US$)	3,429.8
	2.9	2.8	2.1	수입 (2025 년 , 십억 US$)	4,361.7
주요산업	기술, 금융, 자동차, 의료, 에너지, 농업 등				

영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3,644.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6,845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1,117.0
	4.8	0.4	1.1	수입 (2024 년 , 십억 US$)	1,158.0
주요산업	공작 기계, 전자, 자동화 기계, 철도설비, 선박, 항공기 등				

홍콩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407.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729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739.0
	-3.7	3.2	2.5	수입 (2024 년 , 십억 US$)	723.0
주요산업	무역, 물류, 금융, 관광, 의류, 섬유, 조선업 등				

한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1,713.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5,208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835.0
	2.6	1.4	2.0	수입 (2024 년 , 십억 US$)	758.0
주요산업	전자, 통신, 자동차, 화학, 조선, 철강 등				

일본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4,026.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2,320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922.0
	0.9	1.5	0.1	수입 (2024 년 , 십억 US$)	965.0
주요산업	자동차, 전자, 기계, 철강, 비철 금속, 선박 등				

싱가포르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547.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602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978.0
	4.1	1.8	4.4	수입 (2024 년 , 십억 US$)	786.0
주요산업	전자, 화학, 금융서비스, 석유, 가공식품, 생명과학 등				

호주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1,752.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2,676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425.0
	4.2	3.4	1.4	수입 (2024 년 , 십억 US$)	405.0
주요산업	광업, 운수장비, 식품가공, 화학 등				

투자목적, 투자전략에 특정국가 등으로 투자지역을 한정한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상기 국가들은 투자 가능 국가 중 일부를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기 국가들이 아닌 국가에도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상기 국가들에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 동일 집합투자증권에 2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위험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피투자펀드의 운용보고서 및 보유 내역을 검토합니다. 운용보고서에는 포트폴리오 개요, 자산 구성 현황, 펀드 성과, 시장 분석, 운용 경과 및 성과 분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운용 정보가 필요할 경우 피투자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에 정보를 요청하

고, 이를 피투자펀드 위험관리에 활용합니다.

② 환위험관리

구분	세부 내용
환헤지 여부	이 투자신탁은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환헤지 방법	환헤지 전략 실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 헤지비율	이 투자신탁은 기준통화가 미국달러(USD), 영국파운드(GBP), 호주달러(AUD), 일본엔(JPY), 홍콩달러(HKD), 싱가포르달러(SGD) 등인 집합투자증권 등에 일부 투자하므로 외화자산 중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미국달러(USD)와 그 외의 통화에 대해서 80% 이상 수준으로 환헤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유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헤지 비용 및 통화 별 비중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헤지 장점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환율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낮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상쇄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게 해 줍니다. 나아가, 국내보다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이익이 발생할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 단점	환헤지 효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장점이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이 이에 상응하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즉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상쇄시켜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국내보다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헤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헤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선물환 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환헤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9. 미래에셋글로벌알파솔루션증권모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 피투자펀드의 투자 필요성
주식 및 채권 등 전통 자산과 낮은 상관관계를 추구하는, 보다 차별화된 투자 전략에 분산 투자하여 시장 상황에 무관하게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 피투자펀드의 선정 기준
피투자펀드의 운용사/운용팀/운용프로세스/지원 조직 등에 대한 다양한 정량/정성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분석을 마친 뒤, 아래 3가지 기준에 부합되는지에 따라 투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 다양한 시장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우수한 투자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 우수한 투자 역량이 미래에도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
- 포트폴리오 편입 시, 현행 포트폴리오 대비 수익성/안정성 등 개선 가능할지 등의 여부 판단

다. 펀드 실사
펀드 실사는 펀드에 대한 상세 자료 분석, 운용역과의 인터뷰 및 현지 운용사 방문 점검 등을 포함합니다.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한 사전 실사 뿐만 아니라, 투자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투자 역량의 지속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운용사 및 자문사와의 수시 커뮤니케이션 및 정기 사후 실사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집합투자증권등	60% 이상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2	주식	40% 이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3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4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5	기업어음증권 및 어음등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기업어음증권"이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

			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6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7	금리스왑거래	보유 채권 또는 채무 증서 총액의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8	환매조건부매도	보유 증권 총액의 50% 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9	증권의 대여	보유 증권 총액의 50% 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10	증권의 차입	20% 이하	①~⑤에 의한 증권의 차입
11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2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5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6~10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상기 '증권의 차입'은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음

※피투자펀드의 종류와 특성

펀드명	주된 투자대상	운용사	설정일	운용 규모 (억원/백만불)
미래에셋미국밸류업행동주의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H) 종류F	미국 상장주식	미래에셋자산운용	2026.02.09	2.4억원
미래에셋미국밸류업행동주의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UH) 종류F	미국 상장주식	미래에셋자산운용	2026.02.09	1.4억원
Lumyna - HBK Diversified Strategies UCITS Fund (USD B Acc)	글로벌 주식·채권 및 파생상품	HBK Capital Management (HBK Europe Management LLP)	2023.10.31	948백만불
Fulcrum Diversified Absolute Return Fund (I USD Acc)	글로벌 주식·채권·통화·원자재 등 멀티에셋	Fulcrum Asset Management LLP	2017.02.01	1,600백만불
Polar Capital Global Absolute Return Fund (I USD Acc)	글로벌 전환사채·회사채·주식	Polar Capital LLP	2018.12.31	341백만불
GAM Swiss Re Cat Bond Fund (Inst USD Acc)	대재해채권(Catastrophe Bond)	GAM London Ltd·SRILIAC (Swiss Re) 공동운용	2011.10.31	1,952백만불
BlackRock Strategic Funds - Systematic Asia Pacific Equity Absolute Return Fund (D2 USD)	아시아태평양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BlackRock (Luxembourg) S.A.	2017.02.22	1,968백만불
AQR Apex UCITS Fund (A1 USD Acc)	글로벌 주식·채권·통화·원자재 등 멀티에셋	AQR Capital Management, LLC	2017.02.01	2,505백만불
Man Dynamic Income (I USD Acc)	글로벌 국공채·회사채·유동화채권	GLG Partners LP(Man Group)	2022.06.30	8,717백만불

※ 상기는 포트폴리오 예시이며 향후 거시 경제 및 시장 환경 변화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	-

		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4	동일법인발행주식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5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가목 및 나목만 해당)
6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예외)	상기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제한은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한되는 운용관련 규정입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중 가목 또는 나목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지구와 비슷한 것으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법 시행령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①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법 시행령	-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②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종목 이상이고, 각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가목을 적용할 때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7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8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9	파생상품 투자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10	파생상품 투자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11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12	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2~9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1)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대체전략을 주로 활용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에 분산투자합니다.

글로벌대체전략이란 글로벌 경제상황이나 시장상황과 무관한 안정적인 수익 추구를 목표로 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글로벌대체전략으로는 Global Macro, Event Driven, Equity Hedged, Relative value, Multi-Strategy

등이 있습니다.

① Global macro 전략 : 글로벌 거시경제상황을 분석하여 주식, 채권, 금리, 통화등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
② Event Driven 전략 : 기업의 인수합병, 구조조정, 재무건전화, 자사주 매입, 채무교환 등 이벤트 발생시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익이 예상되는 포지션을 구축하는 전략
③ Equity hedged 전략 : 퀀트, 펀더멘털분석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식을 분석하고 매수/매도 하여 수익 추구
④ Relative value 전략 : 연관성 높은 종목간 가격차이가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상황에 대한 정성,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
⑤ Multi strategy : 다양한 전략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수익 추구

※ 상기 운용전략은 글로벌대체전략의 예시이며 시장상황에 따라 전략은 추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글로벌대체전략 펀드 선정 및 투자프로세스

① 투자 Pool 선정
- 다수의 글로벌 펀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글로벌대체전략을 구사하는 펀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데이터 교차 검증을 실시하여 우수 펀드 선별
- 수백여 개 글로벌 유수 운용사들과의 네트워크 활용,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집합투자기구를 선제적으로 발굴
② 투자대상 펀드 분석
- 투자대상 펀드의 정량/정성 지표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투자역량의 탁월성 및 투자역량의 지속 가능성 판단
- 분석결과에 따라 관리
③ 포트폴리오 구축 및 위험관리
- 매크로 전망, 세부 전략별 투자기회등을 고려한 최적 포트폴리오 구축
- 잠재된 가격 하락위험요인들을 사전에 검토, 상시 모니터링 및 철저한 리스크 관리



3) 투자 대상 펀드 중 역외펀드의 경우 엄격한 규정과 기준(UCITS공모펀드 및 이에 준하는 공모펀드)에 따라 유동성 제약, 분산투자 규정, 투자국가 제한, 리스크 통제, 거래상대방 리스크 등을 준수하는 펀드로 한정하여 투자할 예정입니다.

※ UCITS (Undertaking for Collective Investments in Transferable Securities) : 유럽연합(EU)의 공모펀드 기준으로 투자방법, 자본의 성격, 투자기관의 투명성 등에 대한 규정. 이 규정에 따라 유럽연합 내 한 국가에 등록되면 타국가에 추가 등록하지 않고 다른 EU 국가에서도 판매 가능

※ 피투자펀드 개요

펀드명	설정지 국가	외국감독기관	투자비중(%)	주요 투자전략
미래에셋미국밸류업행동주의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H) 종류F	대한민국	해당없음	0.27	글로벌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미국주식 보유내역(SEC 13F)을 분석해 선별한 미국 상장주식에 모자형 구조로 투자, 환헤지 실시(H)
미래에셋미국밸류업행동주의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주식)(UH) 종류F	대한민국	해당없음	0.14	글로벌 행동주의 헤지펀드의 미국주식 보유내역(SEC 13F)을 분석해 선별한 미국 상장주식에 모자형 구조로 투자, 환헤지 미실시(UH)
Lumyna - HBK Diversified Strategies UCITS Fund (USD B Acc)	룩셈부르크	CSSF	17.29	글로벌 주식·채권 시장에서 상대가치·차익거래 중심 멀티전략을 운용, 주요 시장과 상관관계가 낮은 절대수익 추구
Fulcrum Diversified Absolute Return Fund (I USD Acc)	룩셈부르크	CSSF	11.14	주식·채권·통화·원자재 등에 동적 자산배분·매크로·분산전략을 결합해 SOFR+3~5%의 절대수익 추구
Polar Capital Global Absolute Return Fund (I USD Acc)	아일랜드	Central Bank of Ireland	9.81	전환사채 매수-주식 공매도 구조의 전환사채 차익거래를 중심으로 시장 국면과 무관한 절대수익 추구
GAM Swiss Re Cat Bond Fund (Inst USD Acc)	아일랜드	Central Bank of Ireland	19.63	지진·태풍 등 재해위험을 자본시장으로 이전하는 대재해채권(Cat Bond)에 글로벌 분산투자해 보험위험 프리미엄 수취
BlackRock Strategic Funds - Systematic Asia Pacific Equity Absolute Return Fund (D2 USD)	룩셈부르크	CSSF	13.49	아시아태평양(호주·일본 포함) 주식 대상 Systematic 시장중립 롱숏 운용으로 시장방향과 무관한 절대수익 추구
AQR Apex UCITS Fund (A1 USD Acc)	룩셈부르크	CSSF	10.22	매크로·주식 시장중립 롱숏·차익거래(M&A/CB 등) 서브전략에 분산투자하는 시스터매틱 멀티스트래티지
Man Dynamic Income (I USD Acc)	아일랜드	Central Bank of Ireland	16.37	바텀업 크레딧 셀렉션 기반으로 글로벌 채권(국공채·회사채·유동화채권)에 투자해 인컴과 자본이득 추구

각 피투자 펀드에 최대 20% 투자하는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다양한 세부 투자 전략에 잘 분산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편입 비중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 상기는 포트폴리오 예시이며 향후 거시 경제 및 시장 환경 변화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 특성상 비교 가능한 지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투자목적, 투자전략에 특정국가 등으로 투자지역을 한정한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상기 국가들은 투자 가능 국가 중 일부를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기 국가들이 아닌 국가에도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상기 국가들에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산투자요건, 증권의 차입매도 한도 등을 준수함으로써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② 환위험관리

구분	세부 내용
환헤지 여부	이 투자신탁은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환헤지 방법	환헤지 전략 실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 헤지비율	이 투자신탁은 헤지 비용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으로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USD 등)에 대

	해서 80% 이상 수준으로 환헤지를 추구할 예정입니다. 다만,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이종통화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헤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보유자산의 가치 변동으로 인해 헤지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의 규모, 유동성 비율, 헤지 비용 및 통화 별 비중 등 투자신탁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환헤지 전략의 효과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헤지 장점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환율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낮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상쇄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게 해 줍니다. 나아가, 국내보다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이익이 발생할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 단점	환헤지 효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장점이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이 이에 상응하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즉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상쇄시켜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국내보다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헤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헤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선물환 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환헤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10.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자 수익 등의 수익을 추구하며, 일부 국내외 주식 등의 기타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채권	30% 이상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것이어야 한다.) *채권신용평가등급 투자제한: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중 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이하의 채권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법인이 발행한 것에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채권에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2	주식	30% 이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3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4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5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
6	금리스왑거래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7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총액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50%이하	
8	증권의 대여	50% 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9	증권의 차입	20% 이하	채권, 어음 및 자산유동화증권
10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11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2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13	지분증권인 주식등	-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국법령 등에 의해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5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6~10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상기 '증권의 차입'은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음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	-

		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 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	-
4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가목만 적용 제외 해당)
5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6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7	파생상품 투자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8	파생상품 투자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9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
10	동일국가발행 투자증권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발행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국가에서 발행된 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증권을 동일종목으로 본다.	-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2~7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국내외 채권에 최소 30%이상 투자하며, 주식 및 기타자산에 분산 투자합니다.

② 안정적인 Yield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채권과 배당주 및 리츠(상장부동산펀드 등) 등에 주로 투자 하고, 일부 기타 자산의 투자기회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합니다. 상관 관계가 상이한 서로 다른 자산군에 투자함에 따른 포트폴리오 분산효과를 이용하여 장기 가치상승을 추구 합니다.
▶Yield가 양호한 채권 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이자소득 추구
▶배당수익률이 양호한 주식 및 리츠(상장부동산펀드 등) 등의 투자를 통한 배당소득 추구
- 단기 주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베타(β)의 일정수준에서 헤지수행
▶시장상황 등에 따라 기타 자산의 투자기회를 활용한 수익 추구
- 기타 자산의 투자기회를 활용한 투자는 원금손실 가능성을 최소화 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전략을 구사하여, 제한된 위험범위 내에서 수익 추구
- 고/저평가 상태의 주식, 채권 및 기타 자산(Commodity, 외환 등) 투자를 통한 수익 추구

③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집합투자증권 등 기타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자산별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주식 및 리츠 등의 경우 기업 실적 발표 시기에 맞춰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진행합니다. 시장상황,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포트폴리오의 변경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진행합니다.

※ 비교지수 : KIS종합채권지수

<KIS종합채권지수 : 한국의 KIS채권평가에서 작성하여 발표하는 채권지수>
국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를 위해 상기 지수가 비교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투자자에게 반드시 상기 지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과를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 투자신탁이 반드시 상기 지수와 동일한 투자 대상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투자목적, 투자전략에 특정국가 등으로 투자지역을 한정한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상기 국가들은 투자 가능국가 중 일부를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기 국가들이 아닌 국가에도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상기 국가들에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② 환위험관리

구분	세부 내용
환헤지 여부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환헤지 방법	환헤지 전략 실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 헤지비율	이 투자신탁은 외환시장상황 변경 및 운용역의 투자전략 상 투자신탁의 위험축소를 목적으로 환헤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해지 또는 투자증권의 매매로 인하여 헷지대상 기초자산의 규모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초과 헤지포지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 장점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환율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낮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상쇄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게 해 줍니다. 나아가, 국내보다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이익이 발생할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 단점	환헤지 효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장점이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이 이에 상응하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즉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상쇄시켜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국내보다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헤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헤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선물환 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환헤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11.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미주, 유럽, 아시아 지역 등의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이자 수익 등의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채권	60% 이상 (해외채권 60% 이상)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으로 미주, 유럽, 아시아 등의 지역에서 발행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취득 시 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것이어야 한다.) *채권신용평가등급 투자제한: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취득 시 BB+이하의 채권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은 법인이 발행한 것에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2	후순위채권	20% 이하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채권
3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4	어음	40% 이하 (주식관련 사채에의 투자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취득 시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5	금리스왑거래	100% 이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
6	집합투자증권등	4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
7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총액의 5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8	증권의 대여	50% 이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9	증권의 차입	20% 이하	채권, 어음 및 자산유동화증권
10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채권·통화나 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다만, 통화관련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11	장외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10% 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채권・통화나 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다만, 통화관련장외파생상품의 경우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12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3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14	지분증권인 주식등	-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국법령 등에 의해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주1) 단기대출 :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4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5~11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상기 '증권의 차입'은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음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3	동일종목 투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
4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가목만 적용 제외 해당)
5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6	파생상품 투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7	파생상품 투자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8	파생상품 투자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9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
10	동일국가발행 투자증권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발행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국가에서 발행된 증권 중 주식을 제외한 증권을 동일종목으로 본다.	-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2~7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미주, 유럽, 아시아 지역 등의 채권에 최소 60%이상 투자합니다.

② 투자지역(이머징/선진국/한국), 발행기관(국공채/회사채), 등급(투자등급/투기등급), 만기수준(장기/중기/단기) 등 투자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글로벌채권에 분산투자하여 장기가치상승을 추구합니다. 탄력적으로 채권섹터에 대한 자산배분을 실시하고 주기적인 섹터 자산배분 리밸런싱과 시장 이벤트에 따른 수시 리밸런싱을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③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수익 증권 등 기타 증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채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의 특징상 채권 시장 및 채권 섹터의 비중이 유동적으로 변하기에 이 투자신탁의 비교 가능한 지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지수를 참조지수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참조지수: [정기예금금리+150bp] (50%) + KIS종합채권지수(50%)

<정기예금금리>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하는 6개월 만기 정기예금 단순평균금리
<KIS종합채권지수> KIS채권평가에서 작성하여 발표하는 채권지수

그러나 이것이 투자자에게 반드시 위의 지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과를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이 투자신탁이 반드시 위의 지수와 동일한 투자대상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요 대상 국가 현황 (CIA 및 Bloomberg 기준)

미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5 년 , 십억 US$)	30,762.0			인구 (2025년 추정, 만 명)	34,178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3년	2024년	2025년	수출 (2025 년 , 십억 US$)	3,429.8
	2.9	2.8	2.1	수입 (2025 년 , 십억 US$)	4,361.7
주요산업	기술, 금융, 자동차, 의료, 에너지, 농업 등				

영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3,644.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6,845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1,117.0
	4.8	0.4	1.1	수입 (2024 년 , 십억 US$)	1,158.0

주요산업	공작 기계, 전자, 자동화 기계, 철도설비, 선박, 항공기 등

일본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4 년 , 십억 US$)	4,026.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2,320
GDP 성장률 추이 (YoY , %)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 (2024 년 , 십억 US$)	922.0
	0.9	1.5	0.1	수입 (2024 년 , 십억 US$)	965.0
주요산업	자동차, 전자, 기계, 철강, 비철 금속, 선박 등				

투자목적, 투자전략에 특정국가 등으로 투자지역을 한정한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상기 국가들은 투자 가능 국가 중 일부를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기 국가들이 아닌 국가에도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상기 국가들에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위험관리

① 포트폴리오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1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② 환위험관리

구분	세부 내용
환헤지 여부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가 가능한 외화자산에 대하여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환헤지 방법	환헤지 전략 실행 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 또는 장내파생상품인 통화선물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 헤지비율	이 투자신탁은 외환시장상황 변경 및 매니저의 투자전략상 투자신탁의 위험축소를 목적으로 환헤지를 합니다. 다만, 설정/해지 또는 투자증권의 매매로 인하여 헷지대상 기초자산의 규모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초과헤지포지션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 장점	환헤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환율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낮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상쇄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게 해 줍니다. 나아가, 국내보다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이익이 발생할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 단점	환헤지 효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장점이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이 이에 상응하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즉 환헤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하지만, 환헤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상쇄시켜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국내보다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헤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환헤지의 비용 및 투자신탁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국가간 금리차이로 인한 손익을 제외하고도, 환헤지를 위해 중개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수수료 등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주된 환헤지 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인 선물환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데, 선물환 거래는 중개인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상대방과의 손익교환방법에 따라 총 손익을 정산하게 되므로, 환헤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산출을 추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환헤지를 수행한다고 해서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환헤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율변동위험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자는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반기재무제표를 제외한 아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의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감사의견
1기(23.08.24 ~ 24.08.23)	해당사항 없음 주1)
2기(24.08.24 ~ 25.08.23)	해당사항 없음 주1)
3기(25.08.24 ~ 26.08.23)	해당사항 없음 주1)

주1)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40조 및 법 시행령 제264조(회계감사 적용면제)에 의거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에 대한 적용이 면제되었습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항목	3기(26.08.23)	2기(25.08.23)	1기(24.08.23)
운용자산	26,620	14,160	7,616
증권	26,375	14,084	7,570
파생상품	-	-	-
부동산/실물자산	-	-	-
현금 및 예치금	244	76	46
기타운용자산	-	-	-
기타자산	22	10	9
자산총계	26,642	14,171	7,626
운용부채	-	-	-
기타부채	525	291	113
부채총계	525	291	113
원본	21,281	12,257	6,841
수익조정금	-	-	-
이익잉여금	4,834	1,623	670
자본총계	26,116	13,880	7,512

요약 손익계산서			
항목	3기(25.08.24 ~ 26.08.23)	2기(24.08.24 ~ 25.08.23)	1기(23.08.24 ~ 24.08.23)
운용수익	2,081	624	379
이자수익	4	1	-
배당수익	416	215	43
매매/평가차익(손)	1,660	407	335
기타수익	-	-	-
운용비용	98	47	17
관련회사보수	98	46	17
매매수수료	-	-	-
기타비용	-	-	-
당기순이익	1,982	577	361
매매회전율	49	63	60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예를들어 1회계연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입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재무상태표			
항목	3기(26.08.23)	2기(25.08.23)	1기(24.08.23)
운용자산	26,620	14,160	7,616
증권	26,375	14,084	7,570
주식	-	-	-
ETF	-	-	-
채권	-	-	-
매입어음	-	-	-
수익증권	26,375	14,084	7,570
외화유가증권	-	-	-
기타유가증권	-	-	-
파생상품	-	-	-
주가지수매입옵션	-	-	-
ELS	-	-	-
ELW	-	-	-
DLS	-	-	-
부동산/실물자산	-	-	-
부동산	-	-	-
현금 및 예치금	244	76	46
예금	244	76	46
외화예금	-	-	-
CD	-	-	-
정기예금	-	-	-
위탁증거금	-	-	-
청약증거금	-	-	-
기타운용자산	-	-	-
콜론	-	-	-
환매조건부채권	-	-	-
기타자산	22	10	9
미수이자	-	-	-
미수배당금	-	-	-
매도유가증권미수입금	21	10	9
선물정산미수입금	-	-	-
선납(선급)원천세	-	-	-
기타	-	-	-
자산총계	26,642	14,171	7,626
운용부채	-	-	-
매도유가증권	-	-	-
미지급주식	-	-	-
미지급채권	-	-	-
미지급ETF	-	-	-
주가지수매도옵션	-	-	-
기타부채	525	291	113
미지급보수	30	14	7
미지급해지금	109	29	34
미지급이익분배금	386	246	71
미지급원천세	-	-	-
기타부채	-	-	-
부채총계	525	291	113
원본	21,281	12,257	6,841

수익조정금	-	-	-
이익잉여금	4,834	1,623	670
당기순이익	-	-	-
감자차익/차손	-	-	-
자본총계	26,116	13,880	7,512

다.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손익계산서			
항목	3기(25.08.24 ~ 26.08.23)	2기(24.08.24 ~ 25.08.23)	1기(23.08.24 ~ 24.08.23)
운용수익	2,081	624	379
투자수익	420	217	43
이자수익	4	1	-
배당수익	416	215	43
기타수익	-	-	-
매매이익	2,351	525	339
주식매매이익	-	-	-
파생상품매매이익	-	-	-
채권매매이익	-	-	-
외환거래이익	-	-	-
유동자산매매이익	-	-	-
ETF매매이익	-	-	-
수익증권매매이익	2,351	525	339
기타매매이익	-	-	-
매매손실	691	118	3
주식매매손실	-	-	-
파생상품매매손실	-	-	-
채권매매손실	-	-	-
외환거래손실	-	-	-
유동자산매매손실	-	-	-
ETF매매손실	-	-	-
수익증권매매손실	691	118	3
기타매매손실	-	-	-
운용비용	98	47	17
위탁보수비	64	30	11
판매보수비	26	12	4
수탁보수비	4	2	-
사무관리보수비	3	1	-
자문보수비	-	-	-
매매수수료	-	-	-
기타비용	-	-	-
당기순이익	1,982	577	361
비용	790	165	21
수익	2,772	743	382
천좌당 순이익(원)	98	56	100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단위:백만)

종류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잔고		재투자금액
			설정(발생)		환매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금액
'23.08.24~'24.08.23	-	-	1	1	-	-	-	-	-
'24.08.24~'25.08.23	-	-	-	-	-	-	1	1	-
'25.08.24~'26.08.23	1	1	7	8	2	3	6	6	-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잔고		재투자금액
			설정(발생)		환매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금액
'23.12.11~'24.08.23	1	1	-	-	-	-	1	1	-
'24.08.24~'25.08.23	1	1	-	-	-	-	1	1	-
'25.08.24~'26.08.23	1	1	-	-	-	-	1	1	-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잔고		재투자금액
			설정(발생)		환매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금액
'23.08.24~'24.08.23	91	91	199	208	39	40	250	258	-
'24.08.24~'25.08.23	250	271	144	158	222	244	172	185	2
'25.08.24~'26.08.23	172	192	1,041	1,222	643	789	569	625	2

종류O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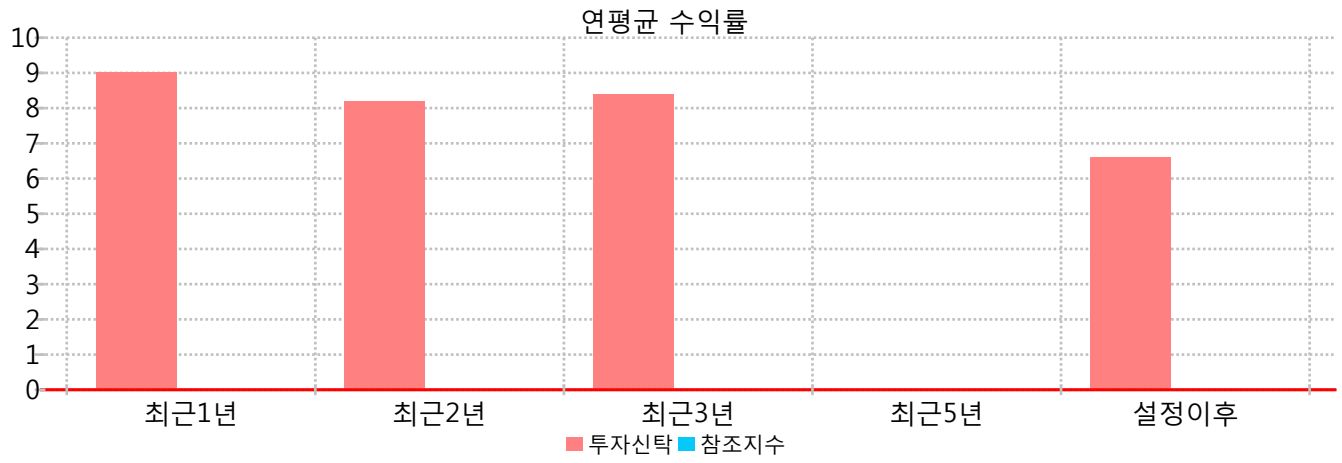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중				기간말잔고		재투자금액
			설정(발생)		환매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좌수(출자지분수)	금액	금액
'23.08.24~'24.08.23	553	563	7,145	7,585	1,109	1,186	6,589	6,962	6
'24.08.24~'25.08.23	6,589	7,239	8,067	8,985	2,573	2,862	12,082	13,361	69
'25.08.24~'26.08.23	12,082	13,685	16,022	19,234	7,400	9,032	20,704	23,886	243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화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어야 합니다.

가. 연평균수익률(단위:%)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이후
(기간)	25.10.01~ 26.09.30	24.10.01~ 26.09.30	23.10.01~ 26.09.30	22.08.24~ 26.09.30	설정일~ 26.09.30
종류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8.49	7.69	6.56	-	6.16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8.41	7.58	-	-	7.88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8.50	7.67	7.88	-	6.09
종류O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8.53	7.70	7.91	-	7.04
투자신탁	9.02	8.19	8.39	-	6.60
수익률 변동성	6.40	5.01	4.46	4.24	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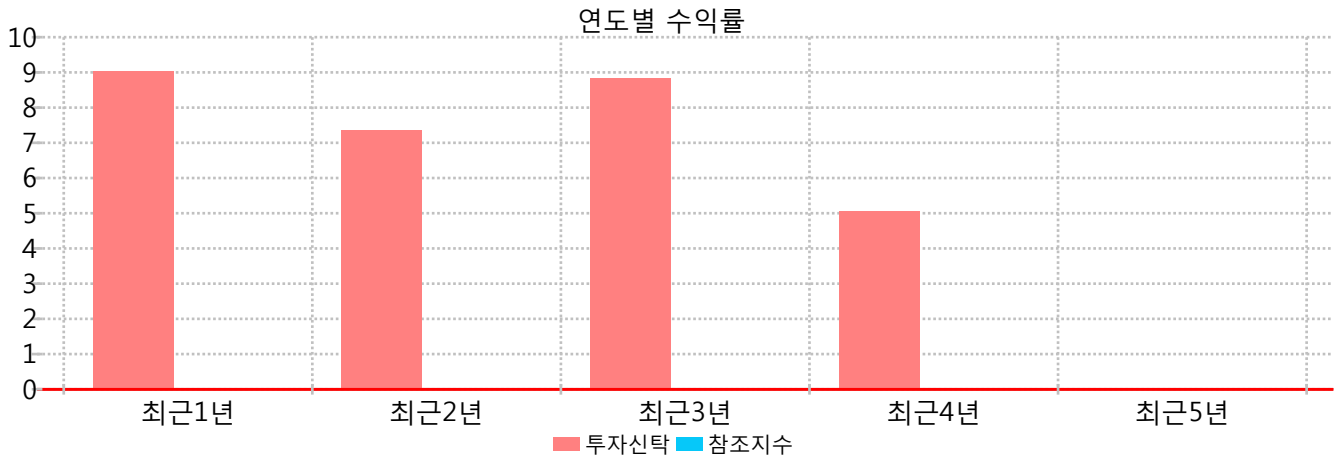


*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단위:%)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기간)	25.10.01~ 26.09.30	24.10.01~ 25.09.30	23.10.01~ 24.09.30	22.10.01~ 23.09.30	22.08.24~ 22.09.30
종류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8.49	6.90	4.36	3.76	-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8.41	6.76	8.56	-	-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8.50	6.85	8.31	4.56	-
종류O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8.53	6.88	8.34	3.92	-
투자신탁	9.02	7.36	8.83	5.06	-



* 연평균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 추이는 과세전의 수익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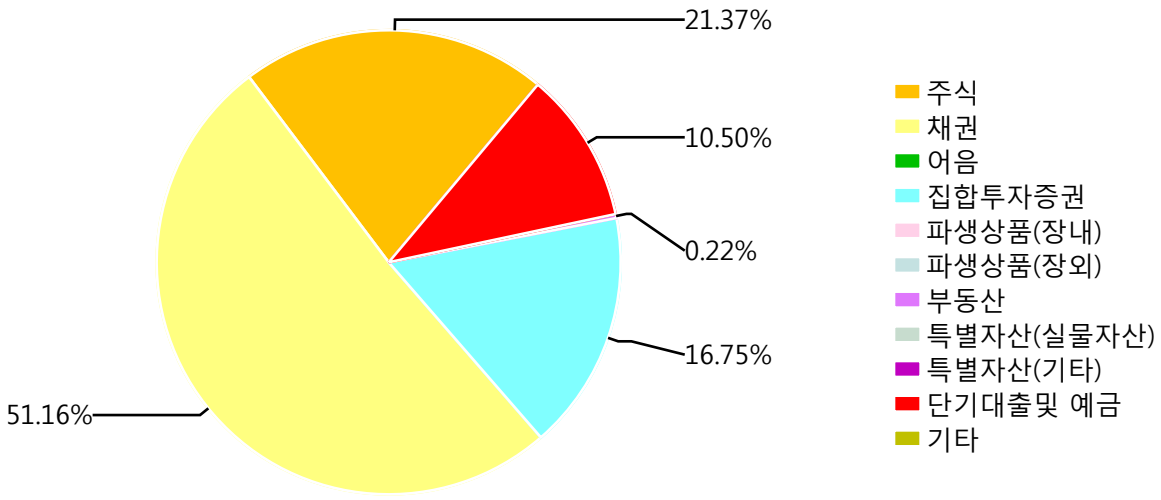
*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으로서 각 수익증권 종류별로 설정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연평균 수익률 중 '설정일 이후' 수익률은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단위 : %, 백만, 2026.09.3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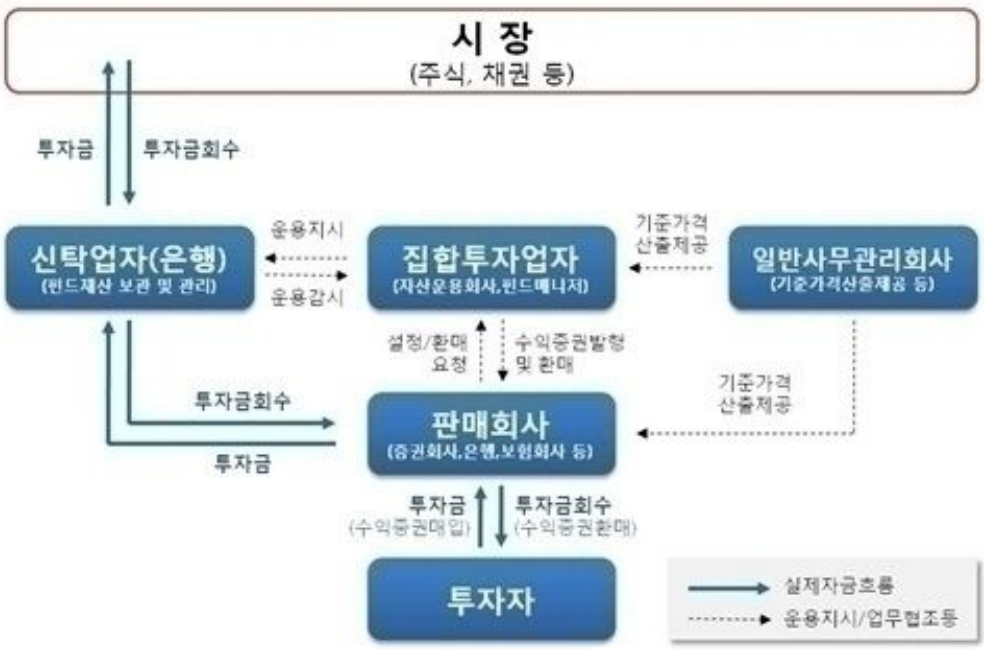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AUD(호주)	21	142	-	-	-	-	3	-	-	-	-	166
	0.08	0.52	-	-	-	-	0.01	-	-	-	-	0.6
CAD(캐나다)	16	-	-	-	-	-	3	-	-	-	-	18
	0.06	-	-	-	-	-	0.01	-	-	-	-	0.07
CHF(스위스)	14	-	-	-	-	-	-	-	-	-	-	14
	0.05	-	-	-	-	-	-	-	-	-	-	0.05
EUR(유럽연합)	121	-	-	-	-	-	1	-	-	-	-	122
	0.44	-	-	-	-	-	0.01	-	-	-	-	0.44
GBP(영국)	39	-	-	-	-	-	2	-	-	-	-	40
	0.14	-	-	-	-	-	0.01	-	-	-	-	0.15
HKD(홍콩)	30	-	-	-	-	-	-	-	-	-	-	30
	0.11	-	-	-	-	-	-	-	-	-	-	0.11
JPY(일본)	88	-	-	-	-	-	5	-	-	-	-	92
	0.32	-	-	-	-	-	0.02	-	-	-	-	0.34

KRW(한국)	4,516	13,324	-	3,930	-	-	-	-	-	2,763	-	24,532
	16.41	48.41	-	14.28	-	-	-	-	-	10.04	-	89.15
SGD(싱가포르)	-	-	-	-	-	-	5	-	-	-	-	5
	-	-	-	-	-	-	0.02	-	-	-	-	0.02
TWD(대만)	18	-	-	-	-	-	-	-	-	-	-	17
	0.07	-	-	-	-	-	-	-	-	-	-	0.07
USD(미국)	1,017	616	-	680	-	-	39	-	-	127	-	2,478
	3.69	2.24	-	2.47	-	-	0.14	-	-	0.46	-	9.01
합계	5,880	14,082	-	4,610	-	-	58	-	-	2,890	-	27,514
	21.37	51.17	-	16.75	-	-	0.22	-	-	10.5	-	100.01

자산구성현황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에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한 금전등을 납입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해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고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금전 등을 납입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에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고 있는 투자신탁재산을 증권 등에 투자하도록 운용지시합니다. 투자자(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한 운용결과에 대해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Tower1 13층(청진동, 그랑서울) (우.03159) ☏ 1577-1640
홈 페 이 지 주 소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자 본 총 계	4조 5,944억원 (2025년 12월 31일 기준)
주 요 주 주 현 황	박 현 주 外
회 사 연 혁	1997년 07월 미래에셋 설립 2006년 11월 미래에셋투신운용주식회사 합병 2012년 3월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주식회사 합병 2024년 3월 멀티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합병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 해지 / 집합투자증권의 운용, 운용지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 목	2025.12.31	2024.12.31	항 목	2025.01.01 ~ 2025.12.31	2024.01.01 ~ 2024.12.31
현금 및 현금성자산	232,510	92,708	영업수익	608,922	423,329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166,491	123,681	영업비용	328,796	282,107
유가증권	5,275,015	4,647,770	영업이익	280,126	141,222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61,379	66,887	지분법손익	591,743	385,105
기타자산	6,545	6,560	영업외수익	1,365	10,250
자산총계	5,741,941	4,937,606	영업외비용	2,744	2,916
예수부채	41,650	20,201	법인세차감전이익	870,489	533,661
차입부채 및 발행사채	529,380	619,314	당기순이익	713,047	450,732
기타부채	576,498	423,101			
부채총합	1,147,528	1,062,616			
자본금	67,861	67,861			
자본잉여금	384,177	246,633			
기타포탈손익누계	-25,339	80,811			
이익잉여금	4,167,714	3,479,685			
자본총계	4,594,413	3,874,990			

라. 운용자산 규모 (2026.09.30 **현재 / 단위:십억좌 / 협회 발표기준)**

집합투자기구 종류	증권					단기금융	파생상품	부동산	재간접	특별자산	혼합자산	PEF	투자일임기타	총계
	주식	혼합주식	혼합채권	채권	소계									
수탁고	147,594	6,412	6,793	46,851	207,650	8,504	25,485	11,518	62,638	12,592	13,887	817	-	343,091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산 중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 등을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추후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별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해당집합투자기구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명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USA) LLC
설립일	2008년 4월 7일 설립
회사주소	1212 Avenue of the Americas, 10th Floor, New York, NY 10036 전화번호: (1)-212-205-8300 팩스: (1)-212-205-8390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명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Hong Kong) Limited
설립일	2003년 12월 17일 설립
회사주소	Room 1101, 11/F, Lee Garden Three, 1 Sunning Road, Causeway Bay, Hong Kong 전화번호: (852)-2295-1500 팩스: (852)-2295-0698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 다음 업무를 위탁합니다.

해당집합투자기구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위탁업무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자산운용 (미국)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 주1) 및 조사분석업무, 일부 매매업무
미래에셋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	미시행

주1) 시장의 급격한 변동, 신규 채권에 대한 입찰 및 이와 유사한 상황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인 미래에셋자산운용(주)에서 상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하나은행
주소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을지로1가) ☏ 1599-1111
홈페이지	www.kebhana.com/
연혁	1971년 6월 설립 2015년 9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책임]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펀드파트너스㈜
주소및 연락처	073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I, 44층 ☏ 02-769-7800
홈페이지	korfp.com
연혁	1998년 11월 ㈜한국채권연구원 설립 2000년 8월 금융감독원 일반사무관리업 등록 2022년 6월 한국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 기준가격의 계산업무 및 공고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 · 환매요청 접수의 제한에 대한 공고 업무
- 납부자산구성내역 등의 공고 업무
-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업무
-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른 투자신탁 운영과 관련되는 공시 및 공고
- 상기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집합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자산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 02-3215-1400
홈페이지	www.bond.co.kr

회사명	에프앤자산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 02-721-5300
홈페이지	www.fnpricing.com

회사명	한국자산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88 ☏ 02-2251-1300
홈페이지	www.koreaap.com

회사명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 02-398-3900

홈페이지	www.nicepni.com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